2012년 교/회/재/정/세/미/나/

# 교회와세금



# 공공책임의 관점에서 본 세금과 4대보험

일시: 2012년 11월 15일(목)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청어람 소강당

주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an.or.kr

# ■ 행사순서

□ 사회: 조제호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 · 14:00 ~ 14:10 오프닝
- · 14:10 ~ 14:30 기조강연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 14:30 ~ 15:15 발제1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 15:15 ~ 15:30 **사례발표** 한희준 목사(이든교회)
- · 15:30 ~ 15:40 휴식
- · 15:40 ~ 16:25 발제2 교회와 4대보험 전윤석 노무사(더 드림 노무법인)
- · 16:25 ~ 17:10 발제3 교회와 수익사업 박기성 세무사(세무법인 세율)
- · 17:10 ~ 17:30 종합토론

# ■ 목 차

# · 기조강연 4p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윤리 |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 발제1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17p

┃ 최호윤 회계사 (제일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 사례발표 30p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 한희준 목사 (이든교회)

# · 발제2 교회와 4대보험 35p

교회와 4대보험 | 전윤석 노무사 (더 드림 노무법인)

# · 발제3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45p

| 박기성 세무사 (세무법인 세율)

# · 별첨양식 59p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 납부서 양식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서 양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기조강연

#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윤리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기독교윤리학)

#### 1. 들어가는 말

박재완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2012년 3월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발언 이후, 년 내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리라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말 세제개편안에 성직자납세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결국 올 해는 넘기게 되었다.\* 기재부는 과세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성직자 과세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성직자과세를 시행하고, 이어서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만 과세인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직자과세'는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 라는 질의로 촉발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사실 종교계 내에서는 꾸준히 자발적인 근로소득세 납부운동이 있어왔다. 현재 개신교 9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표방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회자 과세운동을 범교 단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언론회에서도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성직자들이 반대할 사안이 아님을 근래 밝혔다. 가톨릭도 1994년부터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였고, 최근에는 '성직자 납세원칙 가이드라인'과 '급여지급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개신교 내 한기총은 목회자에게 근로소득세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조계종도 과세평등에 의한 '종교인 소득세'가 아닌 '종교인 근로소득세'는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증여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며, 성직자의 소득 또한 영적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되어왔다. 현실적으로 성직자의 80% 정도가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 한도) 이하로 추정되기 때문에, 과세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에서 공평과세는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의혹과 헌금과 연루된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실정법 차원에서의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sup>\*</sup> 필자는 본 글에서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로 사용하며, 종교 전반의 경우 '성직자'로 사용한다.

이번 '종교인 과세'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 사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쳐질 수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과세라는 법의 형식적 논리는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대다수의 면세점 이하 성직자들에 대한 납세의 절차가 법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과세는 마치 성직자들이 일부러 납세를 회피한 것처럼 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공동체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정직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납세에 대한 책임과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 굳이 회피할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 세금납부 쟁점사항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크게 법적인 관점과 도덕적인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쟁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기독교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자 과세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 세금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짚어 봄으로써, 향후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함의가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법적인 관점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입장에 따라서 매우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성경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근거로 크게 두 가지로 그쟁점이 나눠지는데, 하나는 국가의 조세정책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직자의 종교 활동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조세정책에 성역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세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둘째, 종교인의 경우 예외로 보는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

조세평등의 일례로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재정난을 겪은 이탈리아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저소 득층의 소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황청과 가톨릭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고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세수확대를 위해 가톨릭교회에 대한 면세혜택을 2013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한 경기부양안이 발표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호텔 내 예배실과 같이 수익은 있지만비상업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은 가톨릭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과세안을 부결하였으나, 정부는 "부동산세 납부에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1929년 교황청과 무솔리니정권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 이후 교황청 소유의 '종교 기능' 부동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정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에 과세를 부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하여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

<sup>\*</sup> 아시아경제, 2012.10.11

한민국 헌법 11조에 명시된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조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종종 재정이 불투명하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특수계급의 형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직자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기관과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경우는 재무회계에 대한 정보를 공개 하지만, 종교인과 종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의 의무가 없기때문에 재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편 헌법 20조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종교단체의 지위와 종교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종교나 종교인을 세금과 같은 의무로 간섭할 수 있는지도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헌법 제3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관련 제도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소득세법 34조에는 종교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건물신축, 헌금, 기부금, 그리고 정관상의 선교 봉사 교육과 같은 비영리의 목적에 쓰이는 경우 비과세이고, 교회건물을 임대하거나 수익 사업체의 설립인 경우는 과세이다. 성직자 과세에 대한 문제중에 80%가 미자립의 수준으로 추정할 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4만원, 연간 소득 2,088만원으로서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들이 신고할 경우에 면세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가 별로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지배적이다.

둘째, 성직자의 종교활동과 연관된 행위를 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봉사로 볼 것인지 그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소득세법 12조(비과세 소득)와 13조(세액의 감면)를 보면, 종교인에 대한소득세 면제 조항은 없지만, 목회자의 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보는 관점과 근로가 아닌 종교적봉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목회자에게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납세를 이미 자발적으로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교단법은 목회자에게 주는 생활비가 월급이 아니라목회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는 사례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많은 나라가 예외 없이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세가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목회자를 공무원 대우의 급여와 함께 세금이 있으며, 미국의경우에도 목회자는 소득세가 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세금을 낼 경우 상응하는 복지 혜택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톨릭의 경우도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서울 교구는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 조계종에서도 원칙적으로 세금납부에 대하여 찬성하고있으며, 현재 개신교 내 일부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기하성(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교단차원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sup>\*</sup> 이하 본 글에서 인용되는 법조문은 법제처의 '법령'을 참고하였다. http://www.moleg.go.kr/main.html

<sup>\*\*</sup> 목회자와 같은 종교인들에게는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관행의 기원을 일제시대로 거슬러 가서 3·1 운동 이후 종교인들이 일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근로소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종교법인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성직자는 종교적인 봉사에 해당하며 근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한 신자들의 헌금을 통하여 교회 사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헌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또한 목회자도 사례비를 교회헌금으로 드리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목회자가 부동산 소유나 재산 상속, 강의, 책 저술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일방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성직자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근로가 단지 생활비의 수준을 넘어서 목회자간 소득의 극명한 격차를 보이는 사례가 많으므로 순전한 영적인 봉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영리단체의 구성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므로, 목회자의 경우도 동일한 과세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매기는 '이중과세'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다.

#### 3. 법적인 쟁점에 대한 대안: 법과 종교의 조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성직자과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가 위와 같은 세법의 문제와 연관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서에 나타나는 '가이사'의 것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정의와 교회의 책임, 그리고 사회 개혁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세를 다루는 법의 정의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과 정치, 그리고 종교와 연관된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매우 복잡하며, 다양한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법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때,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적 관행과 명확성, 항상성과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는데, 이 또한 매우 모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적 관습이란 성문헌법국가에서 헌법개정에 의해서만 통제되며, 관습헌법이란 불문헌법국가가 취하는 법으로서 헌법개정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헌법관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헌법의 관습에 근거하여 문서로 존재하는 이 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관습적인 보편적 관점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관습헌법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성문헌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 갖게 되는 것이다. 논쟁이 되는 것은 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 또한 불분명하며, 무엇이 관습의 기준이 되는가의 문제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법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관습과 관습헌법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헌법적 관습이라는 것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의 여부도 모호하다. 왜냐하면 관습자체의 정의가 모호한데, 명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선 사형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010년 2월 25일 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는 1996년 당시 합헌 7명, 위헌 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형제에 대한 법의 판단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2007년 12월 기준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맞은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헌재의 양극화된 분위기가 반영하듯이,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갈등이 양극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다른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위헌 소송의 경우,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둘 다 보장되어있는데, 양심과 국방의 의무 중에서 어느 조항이다른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법이 없다. 헌재는 헌법관습의 입장에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합헌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헌법관습인 성문헌법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관습적인 법 해석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2006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1 의 의견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도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의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전개에서 과거의 결정과달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나 성문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문헌법에 해당하는 관습헌법을 적용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위의 몇 가지 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사회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법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성직자과세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법문화와 영성의 영역으로서의 종교적 규범과 문화적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양 자 사이의 다양한 입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관습으로 과세에서 제외한 성직자들에게 분명한 이유 없이 과세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구분	2008년	2008년	2008년		신 도 수 (명)	
종교별	단체수 (개)	교당수 (개소)	교직자수 (명)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0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95.11.1)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집계 ('85.11.1)
불 교	103	21,935	49,408	10,726,463	10,321,012	8,059,624
개신교	124	58,404	94,615	8,616,438	8,760,336	6,489,282
천주교	1	1,511	14,597	5,146,147	2,950,730	1,865,397
유 교	1	1,049	300	104,575	210,927	483,366
천도교	1	108	1,500	45,835	28,184	26,818
원불교	1	561	1,886	129,907	86,823	92,302
대종교	1	22	22	3,766	7,603	11,030
그 밖의 종교	38	6,710	201,488	197,635	232,209	175,477
계	270	90,300	363,816	24,970,766	22,597,824	17,203,296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당시 기준으로 성직자(교직자)수는 363,816명이 되며, 270여 단체에 90,000이 넘는 교당수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만 하여도 6만

<sup>\*</sup>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

<sup>\*</sup>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

<sup>\*\*</sup> 이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였다. http://ecourt.ccourt.go.kr/home/search/sch.jsp?query= 신행정수도&coll=ALL&m\_navi=1&sch\_query\_type=sch

<sup>\*\*\*</sup>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모나미, 2008), 9. 이 자료에 따르면 단체수, 교당수, 교직자수는 2008년 12월 20

여 교회에 9만 5천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숫자의 성직자들에게 과세의 요구가 있으려면, 지난 100여년이 넘는 개신교 역사 속에서 왜 성직자들은 제외 되었으며, 왜 현 시점에서 과세가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성직자 과세의 법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법의 안정성을 통하여 정의를 확보하고, 동시에 성직자들과 국민들에게 평화와 질서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성직자과세는 과세평등의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의 원리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통하여 영적가치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의 정신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이나 종교는 각각 특유한 공동체, 또는 조직 및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에 각각 지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법과 종교의 신념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성직자 과세와 연관된 종교와 법의 문제는 기존의법체계 속에서 왜 성직자들이 면제되었는지, 그 종교 문화적 배경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왜이 시기에 성직자 과세가 필요한지, 법의 체계 안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교 내 규범들이 이러한 법적 측면을 어떻게 수용하며, 나아가 종교와 법의 제도화, 그리고 실제 적용의실천적 측면의 상호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성직과 과세 문제에 대한 종교와 법의 내면화가 성숙하게 조화되지 아니하면, 목회자의 세금문제의 사안은 끝까지 쟁점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 4. 도덕적 관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잠 30:8)

성경의 잠언기자는 신앙인은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삶도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돈과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쟁점은 단순히 법적인 관점을 넘어서 도덕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회의 재무행정의 투명성에 관한 의혹에서 생기지만, 특히 도덕적 문제는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한금유용 의혹을 받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허위로 기부금이나한금을 냈다고 속이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증서를 받아서 공제하는 일들이 금융당국에 의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은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일례로 과거 90년 대 후반 D생명 회장의 외화밀반출 사건이 있었을 때, 계약자들의 돈 수천억 원이 불법으로 빼돌려진 것이 '교회기부'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추적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당시 자칫 기독교가 탈세의 온상이 아닌가하는 깊은 의혹을 사게 되었다.

교회 헌금의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사용 출처와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참고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지된 재판 중 '헌금'과 '교회'

일까지의 각 종교 단체의 협조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더한 것이다. 단, 천주교는 2007년 12월 31일 자료이며, 개신교는 2007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각 총회에 보고된 경우를 합한 수치이다.

와 연관된 전문 내용이 50건이 넘는 것으로 보아 교회의 헌금과 연관된 시비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로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계 공개를 투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연말에 빔 프로젝트나 간략한 결산서 등으로 대신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내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목회자나 종교법인을 위한 회계처리기준을 세우고, 해당 내용을 정부당국에 신고 및 공시하며, 규모가 큰 종교법인은 외부감사를실시하도록 하자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필자는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소수의 도덕적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성직자나 종교단체의 도덕적 문제는 결국은 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지만, 과세의 문제를 가지고 도덕적 사안으로 접근하기 위하여서 하버마스(Habermas)의 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자.\*\* 특히 그의 이론을 통하여 법과 종교의 조화를 사회의 규범적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패러다임을 통하여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 5. 도덕적 쟁점에 대한 대안: 체계와 생활세계의 조화

이 '체계'와 '생활세계'라는 두 패러다임은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사회실천 전략의 근거가 되며, 공공권력의 역사적 형성과 그 변화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체계'란 경제 행정 등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국가 정부 등이 행위체계를 이루고, 한편 자본과 권력은 그 행위체계의 매개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체계'는 일상적인 개인들 간의 담화를 매개로 형성되는 '생활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생활세계는 관습, 가치, 문화, 규범 등으로서 그 사회의 관심과 방향을 나타내는 상징을 만들어 내며, 의사소통행위 참여자들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참여자들의 소통을 통한 집합적 신념의 기초라고 정의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세계의 구조적 변화는 복잡한 사회의 발전에 점점 유리되어서 의사소통 행위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는 결국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는 현상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일면 사회적인 발전이 체계의 분화를 통하여 복잡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 효과가 있고, 생활세계의 분화는 그 합리성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국가와 사회의 조정 능력을 대변하는 분야가경제와 관료 행정이 되며, 생활세계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해체되면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상호작용은 점점 분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활세계는 차츰 '효율성'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자족적인 하위 체제로 전환하여 가게 되며, 경제와 행정의 조정능력은 대상에 대한 도구적인 제어로 전념하게 되고, 따라서 생활세계의 행위자도 결국 전술적인 조작의 대상으로 전략하여 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 '생활세계의 식민화(die 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를 초래하는 것이다.

<sup>\* &#</sup>x27;교회' 또는 '헌금'과 연관된 전문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p1=&subMenu=1&nwYn=1&query=

<sup>\*\*</sup>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교보문고, 1990), 127-128. 위의 하버마스 인용은 필자의 시민사회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 중 별도의 인용구 없이 일부를 인용하였다. 재인용, 유경동, 『한국사회와 기독교정치윤리』(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개정판), 185-189.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이 중지되면, 경제와 자본의 논리는 국가권력으로서의 체계의 힘이 이성적인 담화 형성의 과정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특히 체계의 복잡성은 전통적인생활 형태를 휩쓸어 버릴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의 의사소통적 하부구조까지 침범하게 된다. 결국경제나 관료 같은 도구적 하위 체제들이 생활세계의 영역에 침범하게 되면,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를 통하여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하여 하버마스는 대중 민주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과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인 조건들 사이의 갈등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동의'를 통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대를 걸었다. '정당성 (legitimacy)'이란 도덕적으로 확정된 사회적인 자기 정체성의 사회 통합적인 보존이며, '정통성 (legitimation)'이란 구성된 가치들을 실현시키는데 적합한 절차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가 중시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도덕적 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질서 유지와 통합'의 차원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세상은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실정법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문화'와 인간의 정신과 영성의 영역으로서의 '신앙의 가치'가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나 종교는 각각 국가, 교회, 그리고 이 둘이 어우러진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인간 개인의 삶에 각각 지대한 영 향을 주고 있다. 실정법 차원에서도 종교문제와 연관된 민형사상의 법리적 사건구성 요인을 분석 할 때, 종교의 신념과 가치도 함께 고려되는 이유가 바로 이점에 있다.

중시하는 점은 사회적 정의나 교회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이 양자가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가 법의 기능을 통하여 성직자 과세라는 절차상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성원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덕적으로 규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사회적 '정당성'의 요구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법적 제도가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과되는 기본권으로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한편, 영토를 근거로 한 근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과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의 정통성도 국민의 정당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도움 없이 '종교의 자유'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종교가 지지하는 통합적인 도덕적 규범이 없는 국가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한 국가는 '종교인 과세'라는 쟁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과수렴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가와 종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하여 목회자의 세금문제와 연관하여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두 가지 점이다. 하나는 목회자의 세금문제가 '체계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다 른 하나는 동시에 목회자 세금의 문제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교회와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체계나 정권을 위한 정치정략적인 논리로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와 성직자의 고유한 정체성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 중에 형성되어 왔으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이상과 복음의 사명을 교회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한, 목회자의 삶을 단순히 체계의 부분으로 인식하여서도 안 되며, 목회자의 양심과 신앙의 행위를 체계의 형식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일부 교회의 탈세 의혹과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여론몰이 식으로 몰고 가서 특정 계층 간에 위화감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 려 과세 문제를 통하여 목회자의 동의와 교회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적 정 치 역량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 문제와 연관하여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앞에서 지적한 정당성과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가 교회와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습의 형태로 확보 된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교회와 성직자의 정통성만 주장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내 성직자 세금의 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성직자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의 의무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 보전과 통합이라는 정당성은 성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직자와 국가 간의 세금만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여서도 안 되고, 동의의 과정에서 왜곡이 있어서도 안 되며, 성직자와 교회 또한 사회적 규범이 요구하는 정당성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규범보다 훨씬 앞서는 도덕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을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면, 희생과 헌신에 근거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몸으로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법이나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라는 이원론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세금이 국가와 기독교의 온전한 통합과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금납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 6. 신학적 관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먼저 중시하여야 하는 것은 돈에 대한 기독교의 정신을 규명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할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허탄한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노동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적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취하여진 개혁이라는 내용도 많은 경우 교회가 세상의 이익과 연관하여 취

한 분열이 많았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위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이러한 위선에 대한 '윤리적 자각'과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특히 교회의 위선은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세금의 문제와 연관하여 기독교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스스로 도덕적 위상을 재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개혁의 사안에 직면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교파나 교리'분열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이중 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일면 개혁의 요소도 있었지만, 기층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 경제적 토대위에 종교적 '계급주의'를 고착화하며 교회의 권력지향적 이기주의를 합리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가 제공하는 정치나 경제적 이익에 교회나 성직자는 종속되고 만다.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안을 단지 법의 해석이나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직자는 무엇보다도 성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향 (reorientation)하여야 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삶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다(막 1:38). 주님은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며(마 10:9),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음을 제자들도 각성하고 있었다(행6:2). 성직자의 본연의 자세는 모든 시간과정성을 다하여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적인 일로부터는 자유 할수밖에 없으며, 부를 소유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성직자들은 부요하신 이로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하여야 한다(고후 8:9).

아퀴나스는 십일조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의 임금에도 속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으며, 십일조를 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삯을 먼저 공제하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십 일조와 연관하여 두 가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십일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또 다른 하나는 십일조로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것이다. 먼저 십일조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는 성직자가 성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땅한 것이며, 이는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에게 있 어서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십일조로 드려지는 헌물은 평신도면 누구든지 참여하여야 할 신앙의 몫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첫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은 첫 열매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보다 직분이 낮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는 구약의 민수기 18장 말씀을 예로 들었다. 주목할 점은 레위인들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부분이다(민

<sup>\*</sup> Richard Niebuhr,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Harper, 1959), 88. 니버의 사상을 통한 한국교회의 문제는 필자 의 선행연구 내용을 옮겼다. 재인용, 유경동, 『한국기독교 사회윤리의 쟁점과 과제』(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88-89.

<sup>\*\*</sup> 이하 해석은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의 아퀴나스의 영문판 신학대전을 참고하였다. Thomas Aquinas, "Whether Christ should have led a life of poverty in this world?" *Summa Theologica* (Benziger Bros. edition, 1947) 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html

<sup>\*\*\*</sup> Thomas Aquinas, "Whether men are bound to pay tithes of all things?" 위의 책.

18:26). 같은 이유로서 성직자들은 십일조를 교황에게 드려야 하고, 교황은 그 헌금으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아퀴나스의 입장은 후에 중세기 가톨릭의 부패로 그 빛을 잃게 된다. 칼빈(John Calvin)과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얼마의 돈을 내고 영혼을 살려고 하였던 당시 교황청의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개혁의 기치를 높였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당시의 체제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라고 보았다. 이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였던 것이다.

루터는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관세와 국세를 세상임금들에게 내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금을 내는 것은 세상에속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범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의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법과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이것에 의하여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이다. 세상의 권위를 따르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의 정신에 근거하며, 헌신적인 사랑의 정신을 내포하는 것이다.\*\*

루터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시 왕정시대에 교황이 독일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본래의 이유는 터키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세금을 내었는데, 그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교황청은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거두고, 교황청을 짓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칼빈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세금은 순전히 국가의 질서를 위한 것이며,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요셉,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 다니엘, 여호스밧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과 왕들이 신앙의 경건성을 통하여 공적헌금이나 기금을 자유롭게 모금한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에스겔서 48장 21절에는 군주에게 많은 땅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칼빈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로마서 13장 6절의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기독교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관리들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탕진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국민의 피'와 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의 당시 관점을 현재의 목회자의 납세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만일 국가가 기독교의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고, 한국 내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세금납부의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통하여 기독교문화의 유산을 보전하는

<sup>\*</sup> Thomas Aquinas, "Whether the clergy also are bound to pay tithes?" 위의 책.

<sup>\*\*</sup> Martin Luther,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e Clondon: John Murray, 1883), http://www.ccel.org/ccel/luther/first\_prin

<sup>\*\*\*</sup> 위의 책.

<sup>\*\*\*\*</sup>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calvin/institutes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국가의 예산을 기독교가 사용할 때, 정교유착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교회의 성지 보전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관련 복지관, 기독교 관련 교도소, 교회연관 유치원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에 예산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막스 베버(Max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칼빈의 '예정론'이 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칼빈주의에서는 개인과 윤리간의 분열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서 칼빈주의의 윤리적 공적주의와 직업개념이 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에게는 청교도 상인에게서 발견되는 금욕주의와 칼빈에게는 철저한 구원이라는 자기 확신을 보장하여 주는 직업노동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적주의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볼 때, 여기서 세금납부는 기독교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교개혁정신에 나타나는 세금의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는 성직자에게 족쇄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강조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그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자신의 변화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루터는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바른 교회는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 안의 것과 밖의 것으로 구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른 기도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은 기독교가 회복하여야 할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인 믿음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세금을 통하여 사회의 책임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금 논쟁은 단지 세금의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신학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달려있다고 본다. 윤리와 직업에 대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책임의 의무로 다가올 때, 목회자의 세금은 오히려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7. 나가는 말: 이웃의 사제로

한국 사회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대변되고 있다. 집이 경제적 수단으로서 부의 상징이 되던 시절은 지나갔다. 국가의 주택정책도 심각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sup>\*</sup> 한 예로 기독교 성지화 사업의 경우, 전남 광주 양림동 일대에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시비 254억이 투입된 선교 유적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여수 애양교회. 영천 자천교회. 최초의 성경전래지 마령진 등에서도 국가 예산이 들어간 기독교 성역화 사업이 진행 되고 있거나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의 세금문제를 교회의 탄압이나 종교 자유의 억압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 CTS 뉴스, 2112.4.24 http://www.cts.tv/news/news\_view

<sup>\*\*</sup>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sup>\*\*\*</sup> Martin Luther's Definition of Faith: An excerpt from "An Introduction to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Luther's German Bible of 1522 by Martin Luther, 1483–1546 Translated by Rev. Robert E. Smith from DR. MARTIN LUTHER'S VERMISCHTE DEUTSCHE SCHRIFTEN. Johann K. Irmischer, ed. Vol 63 (Erlangen: Heyder and Zimmer, 1854), 124–125. [EA 63:124–125] August 1994.

이용하였던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계는 '처치 푸어(Church Poor)'로 힘들어하고 있다. 성전을 지어서 계획하였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매물로 나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형/소형 교회, 자립/미자립 교회, 그리고 도시/지방 교회로 나누어지는 교회의 양극화의 문제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세금의 사안이 목회자의 사명과 존엄성을 물질적 잣대로 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자의 세금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이를 신앙의 규범적 틀 안에서 배려하는 교회와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신도들 사의의 의사소통을 통한 통합의 관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이 것 차이는 세금 납부의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법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지의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회가 도덕적인 질서를 보존하며 교회와 법이 서로의 가치를 배려해 줄 때, 기독교의 선교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와 개인주의와의 연결은 종교개혁정신, 즉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무런 방해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많이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개혁자들의 논점 핵심은 개인에 있기보다는 참된 교회에 관한 것으로서 성도의 교제, 즉신자들의 친교에 있었다.\* 즉,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사제'라는 '만인 사제설'은 '모든 사람은 그 이웃의 사제'라는 뜻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신자는 자신의 사제가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제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삶인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서의 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이해하였고, 종교 개혁 또한 기독교인의 삶, 즉유리에 대한 기독교적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통하여 시작한 것이다.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였던 잠언기자의 고백이 교회와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의 짐이 아니라 이 복음의 거룩한 짐을 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존과 질서를 중시하는 온전한 통합의 원리로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할 때, 목회자가 한 국가의 시민인 한 세금을 내는 데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유일한 사명은 영혼을 위한 '영적 짐'을 지는 것이다.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sup>\*</sup>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Harper & Row, 1963). 『기독교 사회윤리 원론』 (심일섭 역, 대한기독 교서회, 1988), 58.

<sup>\*\*</sup> 위의 책, 62.

# ■ 발제 1

#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주의: 세금은 신고시점의 세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호유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1. 일반사항

가)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교회

나) 신고 및 납부시기(신고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① 매월납: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② 반기납: 반기종료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1/10, 7/10)

다) Home Tax 이용시간

① 신고: 매일 06:00~24:00

② 신고분납부: 365일 07:00~22:00

#### 2. 사례설정

가) 교회명 및 대표: 몸된교회 (신은혜)

나) 고유번호: 203-82-12345

다) 교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7-17

라) 연락처: Tel 02-567-1391, 이메일 cfan@cfan.or.kr

마) 개인별 부양가족 현황

성명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성인 자녀	60세 이상 부모
신은혜	해당안됨	1	1	1
김**	해당안됨	3	_	1
박**	О	1	_	_
손**	미혼	_	_	_

#### 바) 사례비 지급현황

귀속년월: 2012년 10월
지급년월: 2012년 10월

③ 개인별 세부항목내역

성명	기본급	식대	합계
신은혜	1,850,000	100,000	1,950,000
김**	1,270,000	100,000	1,370,000
박**	800,000	100,000	900,000
손**	550,000	100,000	650,000
합계	4,470,000	400,000	4,470,000

성명	기본급	식대	합계	과세소득	부양 가족 수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신은혜	1,850,000	100,000	1,950,000	1,850,000	3	6,870	680
김**	1,270,000	100,000	1,370,000	1,270,000	5+(3-1)=7	0	0
박**	800,000	100,000	900,000	800,000	2	0	0
손**	550,000	100,000	650,000	550,000	1	0	0
합계	4,470,000	400,000	4,470,000	4,870,000		6,870	680

#### 3. 사례비/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계산

- 가) 과세소득 계산
  - ① 산식: 총 지급액 비과세소득
  - ② 비과세소득 종류
    - a.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이하의 식대
    - b.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비
    - c. 비과세학자금
    - d.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관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e.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현재 목회자를 제외한 사무원 등 직원만 해 당합니다.)
    - f. 일직료/숙직료(서식작성시 제외)

#### 나) 부양가족수

- : 본인을 포함하되, 부양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초과 인원을 두번 계산
-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수 -1)
- 다)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 파악
  - ① 간이세액조견표에서 개인별 소득금액과 부양가족수가 만나는 지점의 금액이 원천징수 할 소득세입니다.
  - ② 지방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세의 10%입니다.
  - ③ 원천징수세액이 10원미만인 경우 절사 처리합니다.

(단위:원)

월급여약 [비과세및학			- 10			공제대	상가 <del>족</del> 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880천원	민만	0	0	0	0	0	0	0	0	0	0	0
880	885	1,020	0	0	0	0	0	0	0	0	0	0
885	890	1,070	0	0	0	0	0	0	0	0	0	C
890	895	1,130	0	0	0	0	0	0	0	0	0	0
895	900	1,190	0	0	0	0	0	0	0	0	0	0
900	905	1,250	0	0	0	0	0	0	0	0	0	0

월급여의						공제다	상가족의	中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60	1,265	5,550	2,170	0	0	0	0	0	0	0	0	0
1,265	1,270	5,650	2,280	0	0	0	0	0	0	0	0	0
1,270	1,275	5,760	2,380	0	0	0	0	0	0	0	0	0
1,275	1,280	5,860	2,490	0	0	0	0	0	0	0	0	0

월급여의						공제다	l상가 <del>족</del> 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1,820	1,830	17,390	14,020	6,260	2,890	0	0	0
1,830	1,840	17,600	14,230	6,460	3,090	0	0	0
1,840	1,850	17,810	14,440	6,670	3,290	0	0	0
1,850	1,860	18,020	14,650	6,870	3,500	0	0	0
1,860	1,870	18,230	14,860	7,080	3,700	0	0	0
1,870	1,880	18,450	15,070	7,280	3,900	0	0	0
1,880	1,890	18,660	15,280	7,480	4,110	0	0	0
1,890	1,900	18,930	15,490	7,690	4,310	0	0	0

#### 4. Off-Line 신고서 작성 및 신고서 제출

가) 신고서 title 작성: 신고종류 및 교회(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 사항을 기록하는 란

#### ① 신고구분

a. 매월: 매월 신고하는 경우 표시

b. 반기: 6개월(1월~6월, 7월~12울)단위로 신고하는 경우 표시

c. 수정: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한 수정신고시 표시

d. 연말: 연말정산결과 신고시 표시

e. 환급신청: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다음달로 이월공제하지 않고 신고시 환급청구하는 경우 표시

#### ※ 신고 구분별로 표시항목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표시항목
정기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
		연말정산월 환급신청	[매월], [연말], [환급신청]
	반기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하반기	[반기]
		상반기환급신청	[반기], [연말], [환급신청]
수정신고	월별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 [연말], [수정]
	반기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수정]
		하반기	[반기], [수정]

②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 연월과 지급년월을 기록하며, 귀속년월과 지급년월 단위로 신고 서를 작성합니다.

- a. 월별 납부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재하며, 연말정산은 'XX년 2월'로 표시
- b. 반기 납부시
  - i 상반기: 귀속연월 XX년 1월, 지급연월 XX년 6월
  - ii 하반기: 귀속연월 XX년 7월, 지급연월 XX년 12월
- ③ 법인명: 교회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④ 대표자: 담임 목회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⑥ 사업장소재지: 교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②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단위과세여부: '부'로 표시
- ⑧ 전화번호:
- ⑨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통지들을 수령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가 능한 담당자 개인 메일주소보다 교회 공용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 ① 소득구분
    - a. 간이세액: 매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 조견표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 b. 중도퇴사: 연도중 퇴사한 사람에 대해 퇴사시점에 연도중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
    - c. 일용근로: 일용근로자(시급. 주급. 일급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용을 기재
    - d. 연말정산: 1년간 총급여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계산(연말정산)결과를 2월분 급여 지급액 신고시 기재
  - ② 소득 지급인원, 총지급액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록합니다. 단, 다음 비과세 항목은 기재시 제외합니다(소령214조).

- a.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법 12조 3호 마)
- b.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법 12조 3호 너)
- c. 식대보조비(법 12조 3호 러)
- d.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가운전비 월20만원 이내 등)(소령 12조 3호)
- e. 제복, 피복비(소령 12조 8호)
- ③ 징수 소득세 등: 각 소득별로 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재하며, 중도퇴사 및 연말정산으로 화급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

# 다) 환급세액조정

- ① 환급세액 공제 순서:
  - a. (소득세등) → (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 ② 사례: 전월미환급세액이 700,000원 있고, 당월분 납부세액이 755,000원인 경우

			i i		원	천 징 수	명 세					납부서	백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 를미M도)		급 ଆ세 포함)		징수/	네액	,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b>@소</b> 두	득세 등	(1) 농 어 촌
-			<b>④</b> 인원	(5) ė 7	지급액	⑥소득세등		더촌 별세	⑧가산세	환급세액	(가산	세포함)	⑩농머촌 특별세
	간미세액	A01	20	45,0	00,000	950,000	)	-		9			
=	중도퇴사	A02	5	154,0	00,000	△300,000	7	5,000	30,000	ĺ			
그로소득	일용근로	A03											
특	연말정산	A04								Ī			
	가감계	A10	25	199,0	00,000	650,000	) 7	5,000	30,000	700,000		0	55,000
2	환급세액 :	조정 (	[단위: (	원)					환급		함상일	납부	서 작성
	전월 미혼	급세	액의 계	산		당월발생환	한급세액		1 10	0	9	20	<u>a</u>
⑫ 미혼	전월 68 급세액 신	기환	音 (型) (型)	감잔액 -⑬)	(B) 일본본급	⑥신탁 재산 (국육회사동)	<u>명</u> 그밖의	7) 환급세약 합병 (	(B)(D+(E)	수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조정 세액 1	20 차월미월 환급세 (18-19)	원 환급 신청액
70	00,000	(	20	0,000	0	0			700,	000 200	,000	(	1

- ※ 당월 발생 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전월 이월미환급세액 700,000원을 한도로 공제(a.소득세 650,000 → b.가산세 30,000 → c.농어촌 특별세 20,000 순서로 공제)
- ③ 사례: 전월 미환급세액이 900,000원 있고, 당월분 납부세액이 755,000원인 경우

	변천징수	명세	및 납부	세액 (단		원)				_			
					원	천 징 4	수명세	V				납부	세액
소득지	· 소독구분	코드	소 얼에(교)	를 지 글 서도(나무일,			짐	수세액		LI OU	⑨ 월조정 급세액	⑩소득세 등	⑪농어촌 특별세
			<b>④</b> 인원	⑤총지;	급액	⑥소득/	세등	)농머촌 특별세	⑧가산세	콘	급세액	(기산세포함)	특별세
	간이세액	A01	20	45,000	0,000	950,0	000						1
	중도퇴사	A02	5	154,000	0,000	∆300,0	000	75,000	30,000				j .
군록	일용근로	A03											
<u> </u>	연말정산	A04						ĵ					
	가감계	A10	25	199,000	0,000	650,0	000	75,000	30,000	7	55,000	0	0
<b>②</b> 환	급세액 조	.점	(단위 :	원)					환	를조 •	<u> </u>	강삼일치	
전월	별 미환급	세액의	의 계산		당	월발생혼		8	(iii	0	d9)	20	
@ 전 마본급	변활 (3)기원 세백 신청서	함급 (	9大品型性 (個-個)	(5) 일번환급	(B)		(1) 환 용회사등	1밖의 3세액 합병 등	-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삼 #역 900)	(3) 당혈조 환급세	정 차월미화 학급세학 (18-19	변 환급 신청액
900,0	100	-	900,000		9				900,	ากก	755,00	00 145,000	

- 라) 신고서 제출
  - 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 ② 우편으로 발송(우편 발송일이 신고일입니다)

#### 5. On-Line 신고서(전자신고) 작성 및 제출

- 가) Home Tax 가입 공인인증서로 Home Tax에 가입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회가 세법상 임의단체 성격 이므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에 가입하고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 나) Home Tax 로그인 Home Tax(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등록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합니다.
- 다) 원천세신고 메뉴 선택
  - 초기화면 좌측 중간부문의 원천세신고를 클릭하거나.



- '법인사업자〉세금신고·신고분납부'메뉴를 선택한 후 좌측 또는 중간부분의 원천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 라)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신고서작성•전송 메뉴중 신고 성격을 구분한 Tab을 선택한 후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1) 정기신고: 원천세 법정신고기한중 신고하는 경우
- 2)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 3)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못하고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 마)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2012년 11월 제출분(기한후신고)

교회의 인적사항은 홈택스 가입시 등록한 정보로 표시되며, 신고대상 원천세관련 기본 사항(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소득 종류)에 대하여 선택합니다.

#### 에 사업자기본사항입력 1: 2 ※귀속연월이 현재#도의 3년 전인 신고서부터 신고할◢ 있습니다. 사업자 제출연월 2012 년 11 월 귀속면월 2012 ▼ 년 08 ▼ 월 지급면월 2012 ▼ 년 08 ▼ 월 🌘 🌞 🛎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고구분 구분 · 매월 · 반기 소득처분구분 □ 소득처분신고 환급신청구분 □ 환급신청 ※기한후신고서의 신고구분은 현재 신고구분(매월/반기)대로 작성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에는 환급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천정수의무자 ◈ 표시항목은 선택사항입니다. 법민명(삼호) 일괄납부여부 이예 ⓒ 아니오 교회 대표자(성명) 사업자단위과세여부 () 예 () 아니오 전화번호 E-mail 주소 031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소득종류선택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하십시요. 선택한 소득에 따라 다음화면이 구성되며, 소득별 원천장수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口 연금소득 □ 사업소득 □ 미자소득 ┌ 양도소득 □ 배당소득 □ 저축해지추장세액 口 법인원천 □ 수정신고(세액) ♦ 신고서 부표(뒤쪽) 작성여부 (x)

# 바)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

2012년 11월 제출분(기한후신고)

#### 2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

		소득지급(과세	미달,일부비과세포함)		징수세액	
5835	코드	(4)인원	(5)총지급액 👍	(6)소득세등🍆	(7)놈머촌특별세	🔪 (8)가산세
	A01	간이세액	<b>*</b>	N		
	AUI		4 3,300,000	0	0	0
근	A02	중도퇴사			.,	
	AUZ		0	0	0	0
로	A03	일용근로			1.50	
소	nuu	2002000000	0 0	0		0
	A04	면말정산				
=			0 0	0	0	0
	A10	가감계				
	niu		4 3,300,000	0	0	0
<b>±</b>	l language	총합계 (총합계	에는 징수세액의 납부세액만	입력되며 환급세액은	(15)일반환급항목에 입	력됩니다)
총 합계	A99		4 3,300,000	0	0	0

# 사) 환급세액란 입력

2012년 11월 제출분(기한후신고)

저의 [	미환급세맥의	합니다. 급신청한세액이 있으면, 입력	력하십시요.	
100000000	기환급세액		(13)기환급신청한 세액	30,000
(14)차감진	!액 (12-13)	270,000		7 AN 2 AN 3 AN A A A A
9	월발생환급 <b>세</b>	액	되며, (수당한 세액에서, (* ) 한의 계금액을 차감한 )급 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형	
9			!수당한 세액에서 1'' ②란의 계금액을 차감한 )급 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 (16)신탁재산(금융회사등)	금액을 기재하며, 합니다.
당: (15)일	월발생환급 <b>세</b>	0		
당: (15)일	월발생환급세 반환급	0 0	(16)신탁재산(금융회사등) ※기존 (17)기타항목임	
당: (15)일 17)그밖의 환급세백 ? 도움말	일발생환급세 반환급 금융회사 등 합병 등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6)신탁재산(금융회사동) ※기존 (17)기타항목임 마른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명세서작성8	
당: (15)일 17)그밖의 한급세액 ? 도움말	일발생환급세 반환급 금융회사 등 합병 등	0 0	(16)신탁재산(금융회사동) ※기존 (17)기타항목임 마른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명세서작성8	
(15)일 (15)일 17)그밖의 환급세액 ? 도움말 조정대상황	일발생환급세 반환급 금융회사 등 합병 등	역 0 0 1 1 합병및사업자단위과세전환등에 나 나. ((14)차감잔액 + 당월발:	(16)신탁재산(금융회사동) ※기존 (17)기타항목임 마른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명세서작성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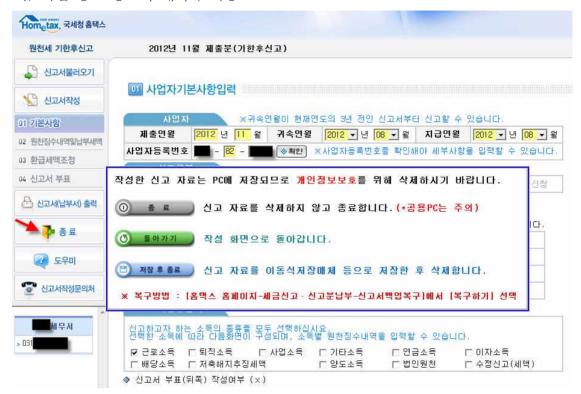
#### 아) 신고내역(입력사항) 확인



자) 전자신고 제출 및 신고내역 접수증(전자확인증)



#### 차) 작업 중도 종료시 데이타 저장



- ① (일반)종료: 작업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작업한 PC에 저장하고 종료.(주의: 다른 컴퓨터에서 Log-in하더라도 작업물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 ② 돌아가기: 작성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 ③ 저장후 종료: 신고서 작업물을 이동매체에 저장한 후 작업한 PC에서는 작업내용을 삭제하고 종료합니다.

#### 6.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서 작성

- 가) Off-Line 납부서 작성시
  - ① 납부서 작성 사례 (3매가 1set)

								ö		È	õ			15/	4	<u> 자용)</u>				(3면
0		40	280	( ?	전자	) 닙	부	번	호			10				수입징수관	14	1	계 좌 번 호	5
분류기호	서크	크트	납	부년	월	밥	부구	분	2	세목		8			-8	THOTE	^1		게 파란 포	5
0126	12	28	N.	121	1	8	4			14		53				고양 세-	무서		012014	
상호(성명)			>	XX	亚兹				사업	자(4	두민)	등록	번호	Х	00	K-82-XXXXXX	일반호	티계 저	<sup>排정경제부소관</sup>	조세
사업장(주소)	00	MC	00	구	00	동 >	XX-	XX					*	전화	타	031-XXX-XXXX	회계인	토	2012	150
71400 E (7)	i H	- 22	2011		14.5	II A		A 04	71.4									2.27		-12
귀속연도/기	분		2012	2	년구	귀속	_	9월 1부금	귀속	ì	분					왼 쪽의 금액을 한 우체국새마을금고				
귀속연도/기 세 목 명	분	3	2012 천	2 백	년	기속 억	_	-		† 만	분	백	십	원			신협,상	흐저축은		
세목명	분 세	3			-		닙	부금	액			백 0	십 0	원 0		우체국-새 <mark>마을</mark> 금고	신협.상 전자남부	<sup>호저축은</sup> 가능)		
세목명		3			-		닙	부금	액	만	천	-				우체국새마음금고 (인터넷등에 의한 (	신협.상 전자남부	<sup>호저축은</sup> 가능)	행 납부하시기 바	
UNIVERSITY OF STREET	세 세	3			-		닙	부금	액	만	천	-				우체국새마음금고 (인터넷등에 의한 (	신협.상 전자남투  한 년	호저축은( 가능) 2012년	행 납부하시기 바 <b>년 10월 10일</b>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납부번호체계: (분류기호)-(서코드)-(납부연월)-(납부구분)-(세목)
- ③ 분류기호: 0126(국세, 국세청)
- ④ 서코드: 관할세무서 코드(별첨 참조)
- ⑤ 납부연월: YYMM
- ⑥ 납부구분(결정구분)
  - 2 수시분 자납: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분
  - 4 원천분 자납: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분
- ⑦ 세목
  - 사업소득세 13
  - 근로소득세 14
  - 기타소득세 16
  - 퇴직소득세 21
- ⑧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 계좌번호 기재(별첨 참조)
- 나) On-Line신고서 작성시
  - ① On-Line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7. 지방소득세(舊 지방세) 납부서 사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영수증									
	명 :	청(상 호	)		XXX 교호					
납	사업장주소			00시 00구 00동 XXX-XX						
<sub>입</sub>	성 명	(供표자)	)		0 0 0					
"	주민(법(	인)등록번	호		0					
자	사업	자등록번	ō		XXX-82-XX	XXX				
	연락	전화 번	ō		031 -XXX-X	(XXX				
20	712 년	9	월	분	0 (지급 9	윌	30일)			
_		시.군	2		고양시					
F	납부액	일금			일만구천심	밴	원정			
	7	분		인원	과세표준액	-	주민세액			
01	자 소	<u> </u>								
НH	당 소	득								
٨Ł	업 소	득								
갑:	종 근로소	- 독		4	193,000		19,300			
_	금 소	득								
21	타 소	득								
갑:	종 퇴직소	- 독		0	0		0			
외국	t인으로부	러받은소	:득							
법인	!세법 제	98조								
	에의한									
소유	세법제1	19조								
(양.	도소득)0	∥ 의한								
_	징수									
가길	l세액(조									
$\perp$		Я		4	193,000		19,300			
	위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2012\	년 10월 10일					
		고양시	М	장·군수	· 구청장 귀하		수납인			
	★ 영숙	수증은 5년	!간	보관하시	기 바랍니다.					

# 8. 기타 작성자료

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별첨 양식)

매월 급여지급시 개인별로 급여 지급액과 비과세소득 내역,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연말정산기초정보로 활용

# ■ 사례발표

# 목회자와 소득세 신고

한희준 목사(이든교회)

이든교회는 2012년 4월 1일 창립되기 전부터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가 되어있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교회정관은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작성해 놓았다. 여기에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교회 창립 후 대표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5월 28일에 열어한희준 목사가 대표자임을 결정했고(그림 1. 대표자선임운영위 회의록) 여기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더 필요했다. 그러나 이든교회는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실 공간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임대된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대신하여 전대동의서가 필요했고(그림 2. 전대동의서) 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7월 11일 모든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한희준 목사는 본인의 주소지인 용산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소재지는 영등 포세무서 관할이었기에 모든 서류는 영등포세무서로 이관 되어 처리되었다.)

이후 7월 13일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이 완료 되었다.(그림 3. 고유번호증) 이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이 남았다. 신고는 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8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발부한다.(그림 4. 접수증)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세무서에서 개별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라는 연락이 오면서 모든 과정이 처리 된 것을 알 수 있었다.(본인은 94년 취업 후 수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실적이 있었다.)

목회자소득세신고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행정적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목회자소득세신고는 목회자 스스로가 바른 시민으로 살기로 결심하기만하면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든교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1. 일 시 : 2012년 5월 28일(월) 오전 11:00~11:30(회의소집 통보일 : 2012년 5월 20일)
- 2. 장 소 : 팀 비전센터 내 반석관 2층(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 3. 참석자 : 김민규 박주희 양정진 이기영 이두리 이은임 한수인 한혜인 한희준(총 9명)
- 4, 안 건 : 대표자(담임목사) 선임의 건
- 5. 회의내용
  - 가, 임시대표(한희준 목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 나. 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 (1) 대표자(담임목사) 선임의 건
    - 임시대표가 대표자 선임안을 발의하고, 대표자 추천을 받다.
- 양정진 형제가 한희준 목사를 대표로 추천하였고 박주희 자매가 동의, 이기영 형제가 재 청한 후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희준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든교회 대표(담임목사)로 선 임하기로 결의하다.
- 6. 이상 안건의 심의 의결을 마치고 11:30에 한희준 목사가 폐회를 선언하다.

2012년 5월 28일

위와 같이 확인 함

# 전대동의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임차인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사무실 94.90㎡ 중 일부

기간: 2012.04.01~2013.12.28

건물주 : 박영환 🕲

임차인: 교회개혁실천연대 🕲

전차인: 이든교회

건물주 박영환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임차한 위의 부동산의 표시내용을 이든교회에게 전대하도록 승인함.

2012년 7월 11일 건물주 박 영 환

#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82-

단 체 명: 이든교회

대표자 성명 : 한희준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205(영등포동4가,영남빌딩)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77가길

교부 사유: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2 년 07 월 13 일 영등포 세무서장





#### [별지 제1호 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12-107- 72549
접 수 일 시	2012.08.10.
민 원 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이든교회 NICE REAL
처리 예정 기한	2012.09.14.
처리 주무 부서	(영등포 ) NTS (전화번호 : 02-2630-9450)
안 내 사 항	平川 ちゅう

민원접수자 : 김수연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02-2630-9226)

영등포 세 무 서

# ■ 발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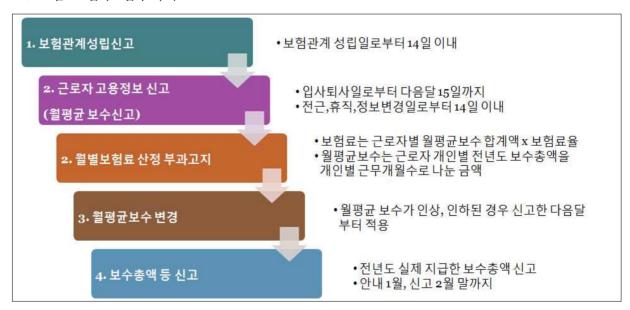
# 교회와 4대보험

전윤석 노무사(더 드림 노무법인)

#### 1. 4대보험이란

- 1)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강제 적용되는 사회적 보험으로
  - (1)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의 예방 및 치료를 보장하기 위함.
  - (2) 국민연금은 노령 등을 대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
  - (3) 고용보험은 실업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 (4)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처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함.

#### 2. 보험료 납부 업무처리



#### 3. 2012년도 4대보험 보험료율(단위:천분율)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	2.9%			실업	0.55%
사용자	장기요양	6.55%	4.5%	산재 35.4%~0.6%	고용/직업	규모별
	\Q\ \_Q\	0.33%			고공/직접	0.25~0.85%
근로자	건강	2.9%	4.5%		실업	0.55%
し 上 ハ	장기요양	6.55%	4.570		一 日 日	0.5570

#### 4. 고용정보 신고

- 1) 근로자 고용정보란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성명, 고용한 날, 고용관계 종료일 등 정보를 말함.
- 2) 고용정보를 기초로 월별 보험료가 산정 부과됨으로 고용정보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3) 고용정보 신고시기

사유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고기한	
신규 고용	근로자 고용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익월 15일	
고용 종료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익월 15일	
전 보	근로자 전보 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사유발생 14일	
휴업 등으로 근로중지	휴직 신고	없음	사유발생 14일	
개명, 주민번호 변경	정보변경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사유발생 14일	
일용직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익월 15일	

#### 4) 신고 방법

- (1) 고용정보신고 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은 팩스 또는 서면신고가 가능 서면신고는 근로복 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로 제출
- (2) 고용정보신고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고용보험EDI(http://www.ei.go.kr),건강보험EDI(http://edi.nhic.or.kr),사회보험EDI(http://bips.bizmeka.com) -사이트 회원가입 후에 인증서등록 후 사용가능
- (3) 전자매체에 의한 신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엑셀에 따라 파일로 작성하여 CD등 전자매체로 제출 (사업장명의 기재한 라벨지 부착 및 신고하고자 하는 고용정 보서식에 사업장정보만 작성하여 서식과 CD를 함께 제출)
- (4)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고용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함.
-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는 별도 신고나 4대보험 공통서식을 같이 사용하게 됨
- (6) 민원서실별 따른 신고방법

고용신고 종류	공통서식여부	신고방법
근로자 고용신고	4대보험 공통서식	-서면: 4개 기관중 1개소 제출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4대보험 공통서식	-정보통신망: 토탈서비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보험EDI, 사회보험EDI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4대보험 공통서식	-전자매체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자 전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 · 산재 공통	-서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 -정보통신망: 토탈서비스, 4대보험센터, 고용보험EDI -전자매체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 · 산재 공통	-서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고용센터로 제출하지 않음에 유의) -정보통신망: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자매체신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5. 건강보험 적용

- 1) 목적
- 2)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
- 3) 특징
  - (1)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직장과 지역으로 가입대상자를 구분
  - (2) 강제가입
  - (3) 포괄적 보장
  - (4) 소득분배기능
  - (5) 단기보험
- 4) 적용대상
  - (1) 적용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단, 법인은 대표이사 포함 기준)
  - (2) 적용단위 :다만, 건설의 경우 연금 ·건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현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3) 예외 :분리적용 가능
  - (4) 의료 급여법 및 국가유공자 등 별도의 법령으로 지원되는 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국민
  - (5) 외국인도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비자종류)에 따라 적용
- 5) 가입종류
  - (1)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등
  -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자로서 소득이 없 는 자
- 6)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1)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 보험료 부담
  - (2) 월별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5.9%, 장기요양보험료율6.55% 단위:천분율)
  - (3) 보수월액
    - 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1~12월) 보수의 총액 및 종사 기간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나. 신고 보수월액 하한 28만원, 상한 7천810만원
    - 다. 2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
  - (4) 휴직자
    - 가. 휴직 등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는 당해 사유 발생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납입을 유예할 수 있음.

- 나.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를 감안하여 최대 50% 보험료 경감
- (5)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사업장의 최고등급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으로 함

#### 6. 국민연금

- 1) 목적
  - (1)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 2) 특징
  - (1)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
  - (2) 퇴직금제도 보완
  - (3) 소득재분배 기능
  - (4)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3) 적용대상
  - (1)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별도 연금제도 적용자 제외
  - (2) 외국인 근로자로서 외국인 본국과 대한민국이 사회보험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연금가 입 대상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국민연금 적용
- 4) 가입종류
  - (1) 사업장가입자
    - 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 나. 단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수급받는 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무보수 법인이사, 등은 적용 제외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지역가입자
    - 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나. 단 가입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수급 받는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자, 국민생활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 (3)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가.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 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1) 직장가입자(기여금)와 사업주(부담금)가 각각 50%씩 보험료 부담

- (2) 월별 연금납부액 = 보수월액 × 9%
- (3) 기준소득월액
  - 가. 최초 가입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30일 평균소득
  - 나. 신고 보수월액 하한 24만원. 상한 3백89만원
  - 다. 가입기간 중에는 전년도 30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 월까지 적용
- (4) 보험료율
- (5)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공제내역을 직장가입자에 게 통지함(급여명세서 등)
- (6)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가. 사업중단 및 실직, 휴직 중
  - 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
  - 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
  - 마.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 바. 행방불명
  - 사. 3개월 이상 입원 및 재해
- 6) 보험료 납입고지

사유발생일	$\rightarrow$	15일	$\rightarrow$	21~ 25일	$\rightarrow$	익월 10일
(자격변동사항)		(신고마감)		(고지서출력 및 발생	송)	(납부)

#### 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 1) 근로자 판단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 되며 노조법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 (2) 근로복지공단 가입 및 부과 매뉴얼(재정-2011-바-2)
    - 가.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는 순수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제외
    - 나. 사무직원, 운전기사, 청소원 등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적 용대상
  - (3)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558)
    - 가.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

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고 사료됨.

나. 어떤 경우에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는 사용종속관계 및 임금성 여부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고용보험은 목사, 전도사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관련판례 1. 서울행법2006구합7249, 근로자 인정

교회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가 교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행해졌고 평소 원고가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를 해 왔으며, 원고가 특별새벽기도회에 교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근무에 임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으로 원고가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한 행위는 원고가 전도사로서 종교활동의 발현 또는 개인적 신앙생활을 발현으로 한 행위라 볼 수 없고교회 업무의 일부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서울행판 2006.3.29, 2006구합7249

#### 관련 판례2. 대판1992누8098, 근로자 인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사건에서 충남 소재 00교회 소속 인원으로 청소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찰집사 1명,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버스운전기사 1명 이외에 교회 산하 유치원(선교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4명 합계 7인은 모두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받는 근로자에 해당됨.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구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으로 00교회는 위 각 조문이 적용되는 사업·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됨.

- 대판 1992.2.14, 1992누8098

#### 관련 판례3. 서울행법2005구합13605, 근로자 부정

서울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00교회에서 관리집사로 근무하던 자가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잦은 분실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을 이유로 해고 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 임

00교회 소속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 되는지가 쟁점인 본 사건에서 담임목사 외 부목사 1명, 심방전도사 2명, 교육전도사 2명, 기획전도사 1명 및 관리집사 1명(이 사건 해고 근로 자)에 대한 근로자 여부를 판단

부목사는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고,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구역인 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견하고 있으며, 담당 직무도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담임목사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임면과 지위에 있어 담임목사와 직접적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금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목회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교육전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교회에서는 교육전도사들은 신학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원고 교회에서 수행한 교리학습지도는 신학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는 점, 원고 교회가 위 교육전도사들에게 지급한 금원도 월 5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2004년 이후 지급되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이뤄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평일에도 학교수업을 받고 주말에만 일정시간을 내어 교회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리학습을 지도한 점(교회 부설 학교 유아원과 이점에서 구별된다) 원고 교회는 위 교육전도사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관계에 필수적인 임금 및 임면 등에 관한 별도의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위 교육전도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교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교회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증거가 없다.

- 서울행법 2005.12.27, 2005구합13605

#### 관련 판례4. 대판2009다37923.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유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 지 등을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판결 등)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

은 것은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명시적인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야 한다.

- 서울행법 2005.12.27, 2005구합13605

#### 2) 고용보험

- (1) 목적
  - 가.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실업 중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함
- (2) 적용대상
  -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농업, 임업, 어업 및 가 사서비스업, 기준 이하 건설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아래 근로자는 적용제외됨
    - ① 65세 이상인 자
    -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③ 국가및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법에 별정우체국 직원
    - ④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 (3) 보험료
  - 가.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50%씩 각각 부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나. 월별 연금납부액 = 보수월액 × 보험요율

(실업급여: 0.55% 고용/직업: 규모별0.25~0.85% 단위:천분율)

- 다. 기준소득월액
  - ① 최초 가입 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30일 평균소득
  - ② 신고 보수월액 하한 24만원, 상한 3백89만원
  - ③ 가입기간 중에는 전년도 30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라. 보험료율
- 마.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고 공제내역을 직장가입자에게 통지함(급여명세서 등)
- 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① 사업중단 및 실직, 휴직 중
  -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중
  - ④ 교정시설에 수용 중
  - ⑤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 ⑥ 행방불명
- ⑦ 3개월 이상 입원 및 재해
- (4) 이직확인
  -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구직급여 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확인 후 정확하게 해야하며 수정신고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
  -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구직급여 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라. 상실 신고시 이직사유를 수정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함.
- (5) 고용보험의 혜택
  - 가. 고용안정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 다. 실업급여
  - 라. 출산휴가급여
  - 마. 육아휴직급여

#### 3) 산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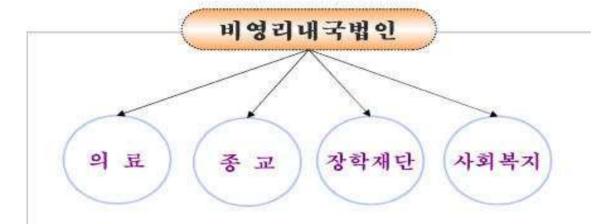
- (1)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 그 유<del>족을</del> 보호하기 위한 제도
- (2) 적용대상
  -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 료 납부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적용됨.
  - 나. 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제도가 있거나 가사서비스 및 농업 및 어업을 적용제외
- (3) 보험료 산정
  - 가. 연간 사업장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사업주에게 100% 징수
  - 나. 종교 및 복지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은 2012년 기준 0.00%
- (4) 업무상 재해 기준
  - 가.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
  - 나. 출퇴근 중 재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행사나 행사준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 다. 과로사 및 돌연사(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등)
- (5) 산재보상 내용
  - 가. 요양급여
  - 나. 휴업급여 및 간병급여

- 다. 장해급여
- 라. 상병보상연금
- 마. 유족연금

## ■ 발제 3

#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박기성 세무사(세무법인 세율)



- ◆ 과세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일정한 소득
- ◆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
- ◆ 과세특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 자산양도에 소득금액 등 계산특례

#### ○ 조세의 종류와 관련 세법

거래형태	소 득	두 획 득	취득	보 유	양도(상속,증여) (이 전)	소 비
인 격	개 인	법 인	개	인, 법인	개인,비영리법인	개인,법인
세 목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세제별	소득	투세제		재산세저		소비세제
관련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세법	소득세법 상 <del>속증</del> 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sup>\*</sup>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 국세

#### ○ 양도소득세

- 양도 : 거주자가 특정자산의 유상양도중 사업성이 없는 것

- 특정자산 :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소정의 주식 출자지분 (장등대주주/ 시장외 거래, 비상장주식)

소정의 기타자자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50,50,50% 3년이내, 80%이상 특정업종영위주식, 특정시설설이용권부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양도로 보지않는 것 : 환지, 신탁, 양도담보, 분할, 무효, 부증

- 양도소득 비과세대상 : 교환, 분합, 파산선고, 대토, 주택

○ 증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낮은 가액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유증, 사인증여 포함)

- 재산상속순위 : ①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①②)

#### ○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

\* 고려대상 : 개인 또는 영리법인과의 형평성유지

개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각 원천별로 열거하여	고유목	<del>-</del>  적사업	수익사업	영리사업
과세	비공익사업	공익사업	구극시 급	장되게 됩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구분기장(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 공익사업, 비공익사업)
- 2. 법인세 과세(영리법인과 비교)
- 3. 고유목적사업용 자금조달
  - 내부에서 자원조달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 외부에서 자원조달 : 지급자에 대하여 지정기부금 처리 허용
- 4. 비영리법인의 중 영세한 비영리법인 ==> 개인과의 형평성유지(사업이배주고3매매)
  - 이자소득 : 개인처럼 취급하여 분리과세 허용
  - 토지, 건물,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 : 개인처럼 취급하여 양도소득 특례허용
- 5. 비영리법인 해산시 그 재산은 국가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 : 청산소득 과세×
  - 개인은 상속인에게 상속세 , 법인은 주주에게 분배되므로 청산소득, 의제배당
- 6.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출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개인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 다만, 공익사업의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하고 사후관리함
  - (개인은 사업소득, 증여세, 법인은 각사업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주식, 출자지분도 포함, 부동산(토지, 건물))

#### ○ 고정자산 처분

	① 고유목적사업 3년이상	② 고육목적사업 3년 미만	③ 공익사업출연재산
부동산	×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자산양도차익특례 운영	상증법에서 사후관리
기계장비	×	0	001111111

#### I. 개 요

#### 1. 비영리법인의 의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영리활동성의 유무라기 보다는 사업활동을 통한 이윤 또는 잔여재산을 그 귀속자에게 분배하느냐 여부로 판단함

즉, 영리법인은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은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이 처분되거나 국가에 귀속됨

#### 2. 비영리법인의 범위

민법(§ 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의료법인, 지방공사,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32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함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등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시 비영리법인으로 봄

#### 3. 공익법인과의 관계

- 인 격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당연법인의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신청승인에 의한 법인의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 1)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
  - 2)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 3) 분배하지 않을 것
  - \* 법인세법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적용
  - \* 소득세법 : 법인으로 보지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개인으로 봄
    - · 공동사업 : 분배되면
    - 1 거주자 : 법인의제되지 않고 분배비율없으면
  - \* 상증법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 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 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다)

####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법인으로서 그 차이점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인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Ⅱ.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검토

#### 1.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62 및 62의2)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소득세법), 주식·신주인수권·출자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채권·증권의 매도에 따른 수입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을 말하며 청산소득에 대한 남세의무는 지지 아니함

#### 2. 구분경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 76)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바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법인세법 § 110)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교부하는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 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 76)

####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고유목적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손입으로 계상하는 경우 한도범위 내에서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 손금산입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외부회 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잉여금처분에 따른 신고조정도 가능함

#### ○ 한도액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100% + 그 밖의 소득금액 × 50%

그 밖의 소득금액 =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 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밖의 소득금액으로 분류함

#### ○ 사용범위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함

#### ○ 해산시 승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음

#### ○사후관리

해산·사업폐지의 경우, 법인 아닌 단체의 승인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준비금의 손입산입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경우 익금산입(이자가산)함

#### ○ 설정배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 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과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 세 산정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

\* 이자소득 등의 소득·이익 중 일부금액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다. 자산양도에 대한 특례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경 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 대상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세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출자지분

○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복

#### 4. 부가가치세

가. 납세의무자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38)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비영리법인도 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바,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기관 등도 부동산 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 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법 § 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기관 등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다. 협력의무 (부가가치세법 § 20)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기관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세기간 : 1기 (1.1.~6.30.), 2기(7.1.~12.31.)

#### 5. 취득세 및 등록세

#### 가. 취득세 (지방세법 § 11, § 13)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등의 사실상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납부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과세표준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무상취득

(예외)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격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증명, 공매방법 에 따른 취득, 신고서 제출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 ■ 세율

① 일반과세 : 표준세율 (예 : 부동산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종교·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 2.8%)

② 중과세: 표준세율 + 중과세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배율) 등

③ 세율특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또는 세율의 특례

####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 28)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지 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해당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 ■ 과세표준

(원칙) 신고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무상취득

#### (예외)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격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증명, 공매방법 에 따른 취득, 신고서 제출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 ■ 세율

① 부동산 :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취득세가 과세되면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음

② 법인등기 :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자총액 등의 0.2%

③ 중과세 : 해당세율 × 300%

#### Ⅲ.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검토

1. 공익법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2)

세법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세제사항은 위의 비영리법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음

-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

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2.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및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상 혜택이 있으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상증법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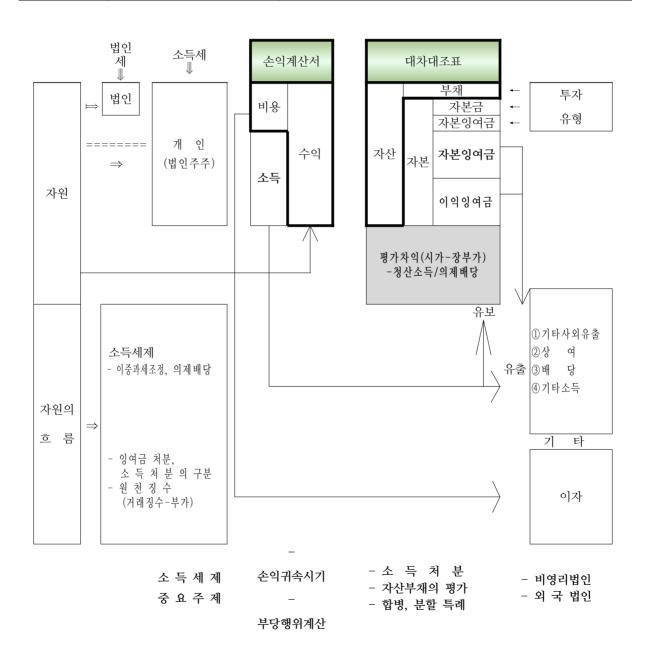
\* 출연자가 의료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증여세 등에 대한 출연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됨(상증법 § 48)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일정내용을 확인받아야합니다(상증법 § 50).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를 참작하여 제외된 일 정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법인세법

		자원의 유입단계
담세력	법 인 단 계	주주단계(개인)
	법 인 세	소 득 세
자 원	법 인	개 인
ВООК	소득 = 수익 - 비용	기타사외유출, 상여, 배당, 기타소득 / 유보 / 기타
TAX	각사소득 = 익금 - 손금	기타사외유출, 상여, 배당, 기타소득 / 유보 / 기타



0 자원에 대한 태도(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중립적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이해)

부채에 대한 대가 : 이자 (실제수입시) 자본에 대한 대가 : 배당 (의사결정시)

- 0 자본의 구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익금불산입) + 자본잉여금(익금산입) + 이익잉여금
- 0 익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단,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함. (익금산입, 익금불산입의 개념과 구분)
- 0 손금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단,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함(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의 개념과 구분)
- 0 임금의 종류
  - ① 급여 ② 상여 ③ 퇴직금 ④ 복리후생비

#### ■ 부가가치세법

- 0 **부가가치의 개념** :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새로이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
- 0 도입배경: 근거과세, 탈세방지(세금계산서 제도)

┌ 부가가치세 :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단일단계거래세

#### 0 조세부담의 역진성문제 해결

- 1. 개념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성질
- 2. 발생이유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단일세율이기 때문이다.

- 3. 완화할 수 있는 제도
  - 1) 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와 경감세율 적용
  - 2) 소득세에 의한 역진부담 완화(소득세율 조정, 인적공제액 인상)
  - 3) 소득세 계산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

- 4) 부의 소득세에 의한 보완
- 5) 고율과세
- 4. 현행 세법상 운용하고 있는 제도
  - 1) 기초생필품에 대한 면세제도 부가가치세법
  - 2) 사치품 등에 대한 고율과세 특별소비세법
  - 3) 인적공제 운영 소득세법

#### 0 부가가치세 개관

- 1. 담세력 : 소비행위 -
- 2. 언 제 : 소비행위시 공급할 때 언제
- 3. 어디서 : 납세지(사업장) 사업장별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
- 4. 누 구 : 소비자에게 납세의무 공급자에게 이전 : 공급자 납세의무자
- 5. 세 목 : 부가가치세
- 6. 얼마(범위-과세표준, 세율) : 부가가치 \* 세율 (매출세액 매입세액)
  - \* 과세물건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예외

# ■ 별첨양식

## ■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세 무 서	세무서명	세무서	세 무 서	세무서명	세무서	세 무 서
	코드	계좌번호		코드	계좌번호		코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 등 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 산 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 광 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 대 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 부 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 인 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 전 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 정 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 광 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 대 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 대 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 대 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 대 구	514	040730	서 부 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 대 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 양 주	132	012302	서 인 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 부 산	602	030562
남 인 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 대 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 대 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 수 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 안 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 울 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 청 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 근 ^ `	^  .	21호 기구] (20	114.4.	20. /11/8	,										(1 5)
		①신고구분				[]원	천징	수이형	행상황선	신 <u>:</u>	고서	2	)귀속연월	1	년 월
매월	반	기 수정 연말	. 소득 처분	환급 신청		[ ]원	천징	수세9	백환급	신경	청서	(3	의지급연월	년	월
			1116	160		<u> </u>							말납부 여부		- <u>-</u> 1, 부
원천	.징	법인명(상호)				대표	.자(성명	3)					<u> </u>		<u>'' '</u> ], 부
원천 수 의무	<u>-</u> -1	기어키(즈미)				,	) v] z].						<u>' - '' ' ' ' '</u> 전화번호		1, 1
의두	·사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업장 ≿재지						<u></u> 자우편주소	_	@
<b>1</b> 9	   対ス	<u> </u>	 보세애	(다의	: 원)		., ,					12	71111		
•	יייי		1 711 9	(21)	• 67		의 처 2	 & 수명서	]				나트	브세액	
				<u></u>	득지급	<u>.                                    </u>	1.00	0 1 0 1	"			9	<b>1</b> 1	T -	
ノ	、ニュ	· 소득구분	코드	(과세	미달,    -세 포	<sup>9</sup> 일부			징수세액			당원정급	10		11)
	-7/	1 - 1 - 1 - 1		비고	·세 포	.함)			T			환급	소득세 등 (가산세	농	어촌
				④인원	⑤총	지급액	6소	득세등	⑦농어· 특별/	존 세	⑧가산세	세액	포함)	÷	별세
		간이세액	A01						기 린	^'					
	ュ	중도퇴사	A02												
	근 로	일용근로	A02												
	소 두	연말정산													
	7	가감계	A04												
			A10												
الح	<u> </u>	퇴직소득	A20												
개 인 (	삼	매월징수	A25												
	사업소득	연말정산	A26												
거주 자·		가감계	A30												
비거 주자		기타소득	A40												
수자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몬	연말정산	A46												
	7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1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sup>円</sup> 주자양도소득	A70												
법인	내	·외국법인원천	A80												
2	수정/	신고(세액)	A90												
	ž	총합계	A99												
<b>②</b> 횐	급서	액 조정 (단	위 : 원	1)											
7	선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빌	난생 환	급세액			<b>X</b> (	**	嵐		
①전	월	加 - 13기환급	14차	감 🕞 。	ı ы⊦   ¾	신탁재	산 💹		한급세액		조정대상	당월조	정 차월이울	<u>i</u>	환급
미혼	·급/	세 신청세액	간인 (①-(	在 [15일 환	급	l신탁재 (금융 회사 등	<u>.</u> )	금융	합병 등		환급세액 화+ ¾+ 約)	환급세 계	액 환급세의 (※-※)	i   신	청액
7			(42)			4/1 0	) 9	사 등	8	-		-	(/		
											,	ו או א	표 도 키 시 /	νн	
	റി	리키스시민키노	Г <b>2</b> Ъ	ગીમી >	] 위 그ન	-1) 1 OF	- フ -il	1 중) 시)	짜] -)] ()]	ا م ا	(   ※ 해당라	!고서 구. 에 "○"	표 등 작성 여 표시를 합니	4두 다.	
내용	전· -음	천징수의무자는 제출하며, 위 실 그대로를 정	'오둑 내용을	·세법 ^ · 충분히	1행명. 검토	) 세186 .하였고	)오 세 워처?	፲앙에 장수의두	따다 뒤 무자가 알	고	부표(4~5				세(10
있는	: 사	실 그대로를 정	확하게	적었음	을 확	인합니다	쿠.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세	무대리인		
			21	701				(भ्रो मो	ተር ላነ	`	7	성명			
			긴	고인				(/) 명	또는 인	)		등록번호	-		
											전호	<u></u> 하번호			
		인은 조세전문 확인합니다.	자격지	-로서 위	신고	서를 성	ქ실하고	1 공정하	하게 작성	하	※ 환급금	·액 2천민	급금 계좌신고 난원 미만인	<u>.</u> 경우에	만 적
											습니다		_ ,		_ '
			세무대	리인				(서명	또는 인	)	예	입처			
	. 57							. 3				금종류			
	세	무 서 장	구	하							계3	아번호		<u></u>	· <u></u>

#### 작성방법 (앞쪽)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및 「법인세법」제120 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 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 바.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 란에 합산합니다.
-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 (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작성방법 (뒤쪽)

- 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 (2) 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⑤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습니다.
    -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D(11))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내역을 원천징수이 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아니하고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 (다)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라의 ¾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 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조정합니다.
  - (5) ¾그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 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 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 명세서(8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7) 永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k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 라. 저축해지 추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 마.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 가. 인원
  -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 (3) 일용근로(AO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 나. 지급액: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0X년 7월, 지급월 200X년 12월, 제출일자 200X년 1월
  -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 (예) 2010. 4월 반기납 포기 :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 수정원천장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하여야 합니다).
-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아니하며, 동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 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1면)

	162	(전자	)납 부 번	호	305	- 8	스미지스교	ia l	게지바흐	6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수입징수관	<sup>N</sup>	계 좌 번 호	-
0126							세독	러		
상호(성명)	7			사업자(주민	등록변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黄	8		
u e n				-337	-3.50	¥	부근	)액	2002	2000	2001	2000	
세 목 명	조	전	백	십	역	전	백	십	만	전	백	십	원
세												П	
세													
농어촌특별세							П	П	П	П			
71													

원 쪽의 금액을 한국문행 국 고(수납)대리점인 운행·농현 우체국·새마윤금고·신헌·상호저축운행·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납 부 서**(수납기관용)

(2면)

수납인

ĕ	- 80	(전자	)납 부 빈	2		600	스이지스코	14	게지비스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 3	수입징수관	^1	계 좌 번 호	ė.
0126							세5	무서		
상호(성명)		A.F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1003	임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U.		- 1		35	전화	- 5	회계연도		

귀속면도/기분				10	귀속					분			
세 목 명	8	200	2576			Y	부분	액	200	200	200	200	- 3
44.8	季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세											Г	Г	Г
농어촌특별세													
계		П	П			П	П	П		Т	П	П	П

된 쪽의 급액을 한국은행	국 고(수	납)대리	점인 8	- 정송협
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상호	전축은	18.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2	왱		지점	
우	체국			수남인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서(납세자용)

(3면)

		(전자	) 납 부 번	호		스이지스코	ii .	계 좌 번 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목		- 3	수입징수관	관서 계좌번의		-
0126		J					세독	2서		,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3			(A)	- 9	전화	- 4	회계연도		9 3

귀속면도/기분				년	产	٤.,				분	ê			
u a n					- 177	'n	부근	악						
세 목 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91	
세						세								
세	1													
농어촌특별세							П	Г		П				
계											П	П		1

원 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 고(수납)대리점인 은행·농협· 무체국·새마음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 납부하시기 비랍니다. (인터넷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00	년	월	일	
0000000	년	월	旦	.00.07	
	은	행		지점	
	우	체국			수남인

수납받을 때 납부자 실명번호인 "주민/사업자 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서 양식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0.1.11>

지방소득세 특별경	일수분	납입서 및 영수	누필통지서
명 힘(삼 호)	0		
남 사업광주소			
성명(대표자)	1		
의 주민(법인)등록번호	1		- 1
자 사업 자동록번호			
연 작 전 화 번호			
년 18	분	(지급	월 일)
신고하는 시.군구			
납부액 일공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액	주민세액
이 자 소 독	Į.		
배 당 소 득			
사 업 소 독		3 3	100
갑 중 근로소득			
연 금 소 득			
기 타 소 특		97	
갑 중 되작소득		28 3	1
외국인으로부터받은소득	Ú.	J U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의한특별장수			10 h
소득세법제 119조			
(양도소독)에 의한			
특별장수	1	5 k	18 3
가감세액(조정맥)			5 2
Я	1		
위 금액을 남입 합니다		위의 금액을 명수 통지합니	
년 뭘 일		년 월	일
인			수남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시장 - 군수	구청장 귀하

일전쟁
원정
_
_
세액
_

명 침(삼 호)			
납 사업장주소			
의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자 사업 자동록번호			
연 학 전 화 번호			
	문	(지급	월 일)
신고하는 시.군구			
남부액 일급	0100		원정
구 분	인원	과세표준액	주민세액
이 자 소 독			
배 당 소 득	-		
사 집 오 목 갑 좀 근로소득			
연 금 소 독	- 0		
기타소독	-		
갑 중 되직소득			
외국인으로부터받은소특			
번인세법 제98조	- 1		
규정메의한특별징수			
소독세법제119조			
(양도소독)에 의한			
특명장수		3	
가감세액(조정액)			
Я			
위의	금맥을	당입합니다.	
	년	월 일	00,000
IA	참 · 군수	구청장 귀하	수날인

(1	귀속연도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 スノ	-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75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근	무처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	ō				⑦입사일				
											퇴사일				
소	득 자	⑧내외국		내국인1/		9국적					(국적코		)		
	1 .1		상가족의 수(분		를 각각 1명으	으로 봄)						명			
			하 자녀의 =									명			
		⑫감면 적	성용 여부	(	여 1, 부 2	⑬감민				14김	·면기간		<u>~</u>		
					ᅵ.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1.	총 급	여	1					. 징수세액			
월별	①5지급연월	16급 여	①상 여	®인정	⑩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200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	21) ~	~ 29	30계	간이서 적용	액표 대상	그 외	③4소투서계 (32+33)	③5지방 소득세	
		<b>9</b> L 1	• 0 1	상여	행사이익	인출금				③)급여 구간	32 소득세	③3소득세	(32)+33)	소득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 Ⅱ . 비 과 세 소 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쪽) 비과세 및 감면소득 코드 참조

**					세서 작성 대상			2.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대상 비과세 소득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을 적음							
월별			국외근로소득	= 1	39	<u>40</u>	<u>41</u> ~ <u>49</u>	€ SLUI		⑤ 자가운전		© ลีเป			
	15 지급연월		코드 : 37	38	이간근로 수당 등	출산 · 보육수당	(코드 : )	50합계 (38+~+49)	⑤ 일직료 등 (H02)	보조금	53~59	⑩합계 (氪+~+59)			
		③6 외화	환율	원화	(001)	(Q01)	,	(0 0,	(=/	(H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 Ⅲ.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등

월별	1. 7	<u> </u>	63	2	2. 차 감 원	천 징 수	액	3.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결 글	61 김면소득	<u>@</u> 김면서맥	납세조합 공제세액	@소득세	⑥지방소득세	66 농어촌특별세	⑥ 외국납부세액	68 연금보험	⑩건강보험	⑩고용보험	①기부금	⑩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sup>※</sup> ⑫ 비고란에는 ⑪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단위 : 원)

월급여약						공제	대상가족	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115천·	원 미만	0	0	0	0	0	0	0	0	0	0	0
1,115	1,120	1,040	0	0	0	0	0	0	0	0	0	0
1,120	1,125	1,100	0	0	0	0	0	0	0	0	0	0
1,125	1,130	1,150	0	0	0	0	0	0	0	0	0	0
1,130	1,135	1,210	0	0	0	0	0	0	0	0	0	0
1,135	1,140	1,270	0	0	0	0	0	0	0	0	0	0
1,140	1,145	1,320	0	0	0	0	0	0	0	0	0	0
1,145	1,150	1,380	0	0	0	0	0	0	0	0	0	0
1,150	1,155	1,430	0	0	0	0	0	0	0	0	0	0
1,155	1,160	1,490	0	0	0	0	0	0	0	0	0	0
1,160	1,165	1,550	0	0	0	0	0	0	0	0	0	0
1,165	1,170	1,600	0	0	0	0	0	0	0	0	0	0
1,170	1,175	1,660	0	0	0	0	0	0	0	0	0	0
1,175	1,180	1,710	0	0	0	0	0	0	0	0	0	0
1,180	1,185	1,770	0	0	0	0	0	0	0	0	0	0
1,185	1,190	1,830	0	0	0	0	0	0	0	0	0	0
1,190	1,195	1,880	0	0	0	0	0	0	0	0	0	0
1,195	1,200	1,940	0	0	0	0	0	0	0	0	0	0
1,200	1,205	1,990	0	0	0	0	0	0	0	0	0	0
1,205	1,210	2,050	0	0	0	0	0	0	0	0	0	0
1,210	1,215	2,110	0	0	0	0	0	0	0	0	0	0
1,215	1,220	2,160	0	0	0	0	0	0	0	0	0	0
1,220	1,225	2,220	0	0	0	0	0	0	0	0	0	0
1,225	1,230	2,270	0	0	0	0	0	0	0	0	0	0
1,230	1,235	2,330	0	0	0	0	0	0	0	0	0	0
1,235	1,240	2,390	0	0	0	0	0	0	0	0	0	0
1,240	1,245	2,440	0	0	0	0	0	0	0	0	0	0
1,245	1,250	2,500	0	0	0	0	0	0	0	0	0	0
1,250	1,255	2,580	0	0	0	0	0	0	0	0	0	0
1,255	1,260	2,680	0	0	0	0	0	0	0	0	0	0
1,260	1,265	2,790	0	0	0	0	0	0	0	0	0	0
1,265	1,270	2,890	0	0	0	0	0	0	0	0	0	0
1,270	1,275	2,990	0	0	0	0	0	0	0	0	0	0
1,275	1,280	3,100	0	0	0	0	0	0	0	0	0	0
1,280	1,285	3,200	0	0	0	0	0	0	0	0	0	0
1,285	1,290	3,300	0	0	0	0	0	0	0	0	0	0
1,290	1,295	3,400	0	0	0	0	0	0	0	0	0	0

											(단역	위 : 원)
월급여약 [비과세및학						공제1	대상가족의	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95	1,300	3,510	0	0	0	0	0	0	0	0	0	0
1,300	1,305	3,610	0	0	0	0	0	0	0	0	0	0
1,305	1,310	3,710	0	0	0	0	0	0	0	0	0	0
1,310	1,315	3,820	0	0	0	0	0	0	0	0	0	0
1,315	1,320	3,920	0	0	0	0	0	0	0	0	0	0
1,320	1,325	4,020	0	0	0	0	0	0	0	0	0	0
1,325	1,330	4,130	0	0	0	0	0	0	0	0	0	0
1,330	1,335	4,230	0	0	0	0	0	0	0	0	0	0
1,335	1,340	4,330	0	0	0	0	0	0	0	0	0	0
1,340	1,345	4,440	1,060	0	0	0	0	0	0	0	0	0
1,345	1,350	4,540	1,170	0	0	0	0	0	0	0	0	0
1,350	1,355	4,640	1,270	0	0	0	0	0	0	0	0	0
1,355	1,360	4,750	1,370	0	0	0	0	0	0	0	0	0
1,360	1,365	4,850	1,480	0	0	0	0	0	0	0	0	0
1,365	1,370	4,950	1,580	0	0	0	0	0	0	0	0	0
1,370	1,375	5,060	1,680	0	0	0	0	0	0	0	0	0
1,375	1,380	5,160	1,790	0	0	0	0	0	0	0	0	0
1,380	1,385	5,260	1,890	0	0	0	0	0	0	0	0	0
1,385	1,390	5,370	1,990	0	0	0	0	0	0	0	0	0
1,390	1,395	5,470	2,100	0	0	0	0	0	0	0	0	0
1,395	1,400	5,570	2,200	0	0	0	0	0	0	0	0	0
1,400	1,405	5,680	2,300	0	0	0	0	0	0	0	0	0
1,405	1,410	5,780	2,410	0	0	0	0	0	0	0	0	0
1,410	1,415	5,880	2,510	0	0	0	0	0	0	0	0	0
1,415	1,420	5,990	2,610	0	0	0	0	0	0	0	0	0
1,420	1,425	6,090	2,710	0	0	0	0	0	0	0	0	0
1,425	1,430	6,190	2,820	0	0	0	0	0	0	0	0	0
1,430	1,435	6,300	2,920	0	0	0	0	0	0	0	0	0
1,435	1,440	6,400	3,020	0	0	0	0	0	0	0	0	0
1,440	1,445	6,500	3,130	0	0	0	0	0	0	0	0	0
1,445	1,450	6,610	3,230	0	0	0	0	0	0	0	0	0
1,450	1,455	6,710	3,330	0	0	0	0	0	0	0	0	0
1,455	1,460	6,810	3,440	0	0	0	0	0	0	0	0	0
1,460	1,465	6,920	3,540	0	0	0	0	0	0	0	0	0
1,465	1,470	7,020	3,640	0	0	0	0	0	0	0	0	0
1,470	1,475	7,120	3,750	0	0	0	0	0	0	0	0	0
1,475	1,480	7,230	3,850	0	0	0	0	0	0	0	0	0
1,480	1,485	7,330	3,950	0	0	0	0	0	0	0	0	0
1,485	1,490	7,430	4,060	0	0	0	0	0	0	0	0	0
1,490	1,495	7,540	4,160	0	0	0	0	0	0	0	0	0

월급여 역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사급세외]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495	1,500	7,640	4,260	0	0	0	0	0	0	0	0	0		
1,500	1,510	7,790	4,420	0	0	0	0	0	0	0	0	0		
1,510	1,520	8,000	4,620	0	0	0	0	0	0	0	0	0		
1,520	1,530	8,210	4,830	0	0	0	0	0	0	0	0	0		
1,530	1,540	8,410	5,040	0	0	0	0	0	0	0	0	0		
1,540	1,550	8,620	5,240	0	0	0	0	0	0	0	0	0		
1,550	1,560	8,830	5,450	0	0	0	0	0	0	0	0	0		
1,560	1,570	9,030	5,660	0	0	0	0	0	0	0	0	0		
1,570	1,580	9,240	5,860	0	0	0	0	0	0	0	0	0		
1,580	1,590	9,450	6,070	0	0	0	0	0	0	0	0	0		
1,590	1,600	9,650	6,280	0	0	0	0	0	0	0	0	0		
1,600	1,610	9,860	6,480	0	0	0	0	0	0	0	0	0		
1,610	1,620	10,070	6,690	0	0	0	0	0	0	0	0	0		
1,620	1,630	10,270	6,900	0	0	0	0	0	0	0	0	0		
1,630	1,640	10,480	7,100	0	0	0	0	0	0	0	0	0		
1,640	1,650	10,690	7,310	0	0	0	0	0	0	0	0	0		
1,650	1,660	10,890	7,520	0	0	0	0	0	0	0	0	0		
1,660	1,670	11,100	7,720	0	0	0	0	0	0	0	0	0		
1,670	1,680	11,300	7,930	0	0	0	0	0	0	0	0	0		
1,680	1,690	11,510	8,140	0	0	0	0	0	0	0	0	0		
1,690	1,700	11,720	8,340	0	0	0	0	0	0	0	0	0		
1,700	1,710	11,920	8,550	0	0	0	0	0	0	0	0	0		
1,710	1,720	12,130	8,760	0	0	0	0	0	0	0	0	0		
1,720	1,730	12,340	8,960	1,040	0	0	0	0	0	0	0	0		
1,730	1,740	12,540	9,170	1,240	0	0	0	0	0	0	0	0		
1,740	1,750	12,750	9,380	1,440	0	0	0	0	0	0	0	0		
1,750	1,760	12,960	9,580	1,640	0	0	0	0	0	0	0	U		
1,760	1,770	13,160	9,790	1,830	0	0	0	0	0	0	0	0		
1,770	1,780 1,790	13,370 13,580	10,000 10,200	2,030 2,230	0	0	0	0	0	0	0	0		
1,780 1,790	1,790	13,780	10,200	2,430	0	0	0	0	0	0	0	0		
1,800	1,810	13,780	10,410	2,430	0	0	0	0	0	0	0	0		
1,810	1,820	14,200	10,820	2,830	0	0	0	0	0	0	0	0		
1,820	1,830	14,400	11,030	3,020	0	0	0	0	0	0	0	0		
1,830	1,840	14,400	11,230	3,220	0	0	0	0	0	0	0	0		
1,840	1,850	14,820	11,440	3,420	0	0	0	0	0	0	0	0		
1,850	1,860	15,020	11,650	3,620	0	0	0	0	0	0	0	0		
1,860	1,870	15,230	11,850	3,820	0	0	0	0	0	0	0	0		
1,870	1,880	15,440	12,060	4,020	0	0	0	0	0	0	0	0		
1,880	1,890	15,640	12,270	4,220	0	0	0	0	0	0	0	0		
2,000	2,000	10,010	12,210	1,000	J	9		ı	3	3	J			

이상		공제대상가족의 수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890	1,900	15,850	12,470	4,410	1,040	0	0	0	0	0	0	0
1,900	1,910	16,060	12,680	4,610	1,240	0	0	0	0	0	0	0
1,910	1,920	16,260	12,890	4,810	1,440	0	0	0	0	0	0	0
1,920	1,930	16,470	13,090	5,010	1,630	0	0	0	0	0	0	0
1,930	1,940	16,680	13,300	5,210	1,830	0	0	0	0	0	0	0
1,940	1,950	16,880	13,510	5,410	2,030	0	0	0	0	0	0	0
1,950	1,960	17,090	13,710	5,600	2,230	0	0	0	0	0	0	0
1,960	1,970	17,290	13,920	5,800	2,430	0	0	0	0	0	0	0
1,970	1,980	17,500	14,130	6,000	2,630	0	0	0	0	0	0	0
1,980	1,990	17,710	14,330	6,200	2,820	0	0	0	0	0	0	0
1,990	2,000	17,910	14,540	6,400	3,020	0	0	0	0	0	0	0
2,000	2,010	18,120	14,750	6,600	3,220	0	0	0	0	0	0	0
2,010	2,020	18,330	14,950	6,800	3,420	0	0	0	0	0	0	0
2,020	2,030	18,530	15,160	6,990	3,620	0	0	0	0	0	0	0
2,030	2,040	18,740	15,370	7,190	3,820	0	0	0	0	0	0	0
2,040	2,050	19,060	15,570	7,390	4,020	0	0	0	0	0	0	0
2,050	2,060	19,380	15,780	7,590	4,210	0	0	0	0	0	0	0
2,060	2,070	19,700	15,990	7,790	4,410	1,040	0	0	0	0	0	0
2,070	2,080	20,020	16,190	7,990	4,610	1,240	0	0	0	0	0	0
2,080	2,090	20,340	16,400	8,180	4,810	1,430	0	0	0	0	0	0
2,090	2,100	20,670	16,600	8,380	5,010	1,630	0	0	0	0	0	0
2,100	2,110	20,990	16,810	8,580	5,210	1,830	0	0	0	0	0	0
2,110	2,120	21,310	17,020	8,780	5,400	2,030	0	0	0	0	0	0
2,120	2,130	21,630	17,220	8,980	5,600	2,230	0	0	0	0	0	0
2,130	2,140	21,950	17,430	9,180	5,800	2,430	0	0	0	0	0	0
2,140	2,150	22,270	17,640	9,380	6,000	2,630	0	0	0	0	0	0
2,150	2,160	22,590	17,840	9,570	6,200	2,820	0	0	0	0	0	0
2,160	2,170	22,910	18,050	9,770	6,400	3,020	0	0	0	0	0	0
2,170	2,180	23,240	18,260	9,970	6,600	3,220	0	0	0	0	0	0
2,180	2,190	23,560	18,460	10,170	6,790	3,420	0	0	0	0	0	0
2,190	2,200	23,880	18,670	10,370	6,990	3,620	0	0	0	0	0	0
2,200	2,210	24,200	18,950	10,570	7,190	3,820	0	0	0	0	0	0
2,210	2,220	24,520	19,270	10,760	7,390	4,010	0	0	0	0	0	0
2,220	2,230	24,840	19,590	10,960	7,590	4,210	0	0	0	0	0	0
2,230	2,240	25,160	19,910	11,160	7,790	4,410	1,040	0	0	0	0	0
2,240	2,250	25,490	20,240	11,360	7,980	4,610	1,230	0	0	0	0	0
2,250	2,260	25,810	20,560	11,560	8,180	4,810	1,430	0	0	0	0	0
2,260	2,270	26,130	20,880	11,760	8,380	5,010	1,630	0	0	0	0	0
2,270	2,280	26,450	21,200	11,960	8,580	5,210	1,830	0	0	0	0	0
2,280	2,290	26,770	21,520	12,150	8,780	5,400	2,030	0	0	0	0	0

월급여의 [비과세및학	백(천원) 사금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2,290	2,300	27,090	21,840	12,350	8,980	5,600	2,230	0	0	0	0	0
2,300	2,310	27,410	22,160	12,550	9,180	5,800	2,430	0	0	0	0	0
2,310	2,320	27,730	22,480	12,750	9,370	6,000	2,620	0	0	0	0	0
2,320	2,330	28,060	22,810	12,950	9,570	6,200	2,820	0	0	0	0	0
2,330	2,340	28,380	23,130	13,150	9,770	6,400	3,020	0	0	0	0	0
2,340	2,350	28,700	23,450	13,340	9,970	6,590	3,220	0	0	0	0	0
2,350	2,360	29,020	23,770	13,540	10,170	6,790	3,420	0	0	0	0	0
2,360	2,370	29,340	24,090	13,740	10,370	6,990	3,620	0	0	0	0	0
2,370	2,380	29,660	24,410	13,940	10,560	7,190	3,810	0	0	0	0	0
2,380	2,390	29,980	24,730	14,140	10,760	7,390	4,010	0	0	0	0	0
2,390	2,400	30,300	25,050	14,340	10,960	7,590	4,210	0	0	0	0	0
2,400	2,410	30,630	25,380	14,530	11,160	7,780	4,410	1,030	0	0	0	0
2,410	2,420	30,950	25,700	14,730	11,360	7,980	4,610	1,230	0	0	0	0
2,420	2,430	31,270	26,020	14,930	11,560	8,180	4,810	1,430	0	0	0	0
2,430	2,440	31,610	26,340	15,130	11,760	8,380	5,010	1,630	0	0	0	0
2,440	2,450	32,410	26,660	15,330	11,950	8,580	5,200	1,830	0	0	0	0
2,450	2,460	33,210	26,980	15,530	12,150	8,780	5,400	2,030	0	0	0	0
2,460	2,470	34,020	27,300	15,730	12,350	8,980	5,600	2,230	0	0	0	0
2,470	2,480	34,820	27,630	15,920	12,550	9,170	5,800	2,420	0	0	0	0
2,480	2,490	35,620	27,950	16,120	12,750	9,370	6,000	2,620	0	0	0	0
2,490	2,500	36,430	28,270	16,320	12,950	9,570	6,200	2,820	0	0	0	0
2,500	2,510	37,26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3,030	0	0	0	0
2,510	2,520	38,110	28,940	16,740	13,360	9,990	6,610	3,240	0	0	0	0
2,520	2,530	38,970	29,280	16,950	13,580	10,200	6,830	3,450	0	0	0	0
2,530	2,540	39,820	29,630	17,160	13,790	10,410	7,040	3,660	0	0	0	0
2,540	2,550	40,680	29,970	17,370	14,000	10,620	7,250	3,870	0	0	0	0
2,550	2,560	41,540	30,310	17,590	14,210	10,840	7,460	4,090	0	0	0	0
2,560	2,570	42,390	30,650	17,800	14,420	11,050	7,670	4,300	0	0	0	0
2,570	2,580	43,250	31,000	18,010	14,630	11,260	7,880	4,510	1,130	0	0	0
2,580	2,590	44,100	31,340	18,220	14,850	11,470	8,100	4,720	1,350	0	0	0
2,590	2,600	44,960	31,830	18,430	15,060	11,680	8,310	4,930	1,560	0	0	0
2,600	2,610	45,810	32,690	18,650	15,270	11,900	8,520	5,150	1,770	0	0	0
2,610	2,620	46,670	33,540	18,920	15,480	12,110	8,730	5,360	1,980	0	0	0
2,620	2,630	47,530	34,400	19,250	15,690	12,320	8,940	5,570	2,190	0	0	0
2,630	2,640	48,380	35,260	19,580	15,910	12,530	9,160	5,780	2,410	0	0	0
2,640	2,650	49,240	36,110	19,910	16,120	12,740	9,370	5,990	2,620	0	0	0
2,650	2,660	50,090	36,970	20,240	16,330	12,960	9,580	6,210	2,830	0	0	0
2,660	2,670	50,950	37,820	20,570	16,540	13,170	9,790	6,420	3,040	0	0	0
2,670	2,680	51,800	38,680	20,900	16,750	13,380	10,000	6,630	3,250	0	0	0
2,680	2,690	52,660	39,540	21,230	16,970	13,590	10,220	6,840	3,470	0	0	0

2,690 2 2,700 2 2,710 2	]만 2,700	1	_	공제대상가족의 수									
2,700 2 2,710 2	2,700		2	3	4	5	6	7	8	9	10	11	
2,710		53,520	40,390	21,560	17,180	13,800	10,430	7,050	3,680	0	0	0	
	2,710	54,370	41,250	21,890	17,390	14,020	10,640	7,270	3,890	0	0	0	
	2,720	55,230	42,100	22,220	17,600	14,230	10,850	7,480	4,100	0	0	0	
2,720	2,730	56,080	42,960	22,550	17,810	14,440	11,060	7,690	4,310	0	0	0	
2,730	2,740	56,940	43,810	22,880	18,030	14,650	11,280	7,900	4,530	1,150	0	0	
2,740	2,750	57,790	44,670	23,210	18,240	14,860	11,490	8,110	4,740	1,360	0	0	
2,750	2,760	58,650	45,530	23,540	18,450	15,070	11,700	8,320	4,950	1,570	0	0	
2,760	2,770	59,510	46,380	23,870	18,660	15,290	11,910	8,540	5,160	1,790	0	0	
	2,780	60,360	47,240	24,200	18,950	15,500	12,120	8,750	5,370	2,000	0	0	
2,780	2,790	61,220	48,090	24,520	19,270	15,710	12,340	8,960	5,590	2,210	0	0	
	2,800	62,070	48,950	24,850	19,600	15,920	12,550	9,170	5,800	2,420	0	0	
2,800	2,810	63,120	49,800	25,180	19,930	16,130	12,760	9,380	6,010	2,630	0	0	
2,810	2,820	64,340	50,660	25,510	20,260	16,350	12,970	9,600	6,220	2,850	0	0	
2,820	2,830	65,560	51,520	25,840	20,590	16,560	13,180	9,810	6,430	3,060	0	0	
	2,840	66,780	52,370	26,170	20,920	16,770	13,400	10,020	6,650	3,270	0	0	
	2,850	68,010	53,230	26,500	21,250	16,980	13,610	10,230	6,860	3,480	0	0	
	2,860	69,230	54,080	26,830	21,580	17,190	13,820	10,440	7,070	3,690	0	0	
2,860	2,870	70,450	54,940	27,160	21,910	17,410	14,030	10,660	7,280	3,910	0	0	
	2,880	71,670	55,790	27,490	22,240	17,620	14,240	10,870	7,490	4,120	0	0	
2,880	2,890	72,900	56,650	27,820	22,570	17,830	14,460	11,080	7,710	4,330	0	0	
2,890	2,900	74,120	57,510	28,150	22,900	18,040	14,670	11,290	7,920	4,540	1,170	0	
2,900	2,910	75,340	58,360	28,480	23,230	18,250	14,880	11,500	8,130	4,750	1,380	0	
	2,920	76,560	59,220	28,810	23,560	18,470	15,090	11,720	8,340	4,970	1,590	0	
	2,930	77,790	60,070	29,140	23,890	18,680	15,300	11,930	8,550	5,180	1,800	0	
	2,940	79,010	60,930	29,470	24,220	18,970	15,510	12,140	8,760	5,390	2,010	0	
	2,950	80,230	61,780	29,800	24,550	19,300	15,730	12,350	8,980	5,600	2,230	0	
2,950	2,960	81,450	62,700	30,130	24,880	19,630	15,940	12,560	9,190	5,810	2,440	0	
2,960	2,970	82,680	63,930	30,460	25,210	19,960	16,150	12,780	9,400	6,030	2,650	0	
2,970	2,980	83,900	65,150	30,790	25,540	20,290	16,360	12,990	9,610	6,240	2,860	0	
2,980	2,990	85,120	66,370	31,120	25,870	20,620	16,570	13,200	9,820	6,450	3,070	0	
	3,000	86,340	67,590	31,450	26,200	20,950	16,790	13,410	10,040	6,660	3,290	0	
3,000	3,020	88,180	69,430	32,490	26,690	21,440	17,100	13,730	10,350	6,980	3,600	0	
3,020	3,040	90,620	71,870	34,140	27,350	22,100	17,530	14,150	10,780	7,400	4,030	0	
	3,060	93,070	74,320	35,790	28,010	22,760	17,950	14,580	11,200	7,830	4,450	1,080	
	3,080	95,510	76,760	37,440	28,670	23,420	18,380	15,000	11,630	8,250	4,880	1,500	
	3,100	97,960	79,210	39,080	29,330	24,080	18,830	15,430	12,050	8,680	5,300	1,930	
	3,120	100,400	81,650	40,730	29,990	24,740	19,490	15,850	12,470	9,100	5,720	2,350	
3,120	3,140	102,850	84,100	42,380	30,650	25,400	20,150	16,270	12,900	9,520	6,150	2,770	
	3,160	105,290	86,540	44,030	31,310	26,060	20,810	16,700	13,320	9,950	6,570	3,200	
3,160	3,180	107,740	88,990	45,680	32,550	26,720	21,470	17,120	13,750	10,370	7,000	3,620	

의그러	M/ 권 이 \										(단의	위 : 원)
-	객(전원) 학자금제외]					공제대	대상가족의	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3,180	3,200	110,180	91,430	47,330	34,200	27,380	22,130	17,540	14,170	10,790	7,420	4,040
3,200	3,220	112,630	93,880	48,980	35,850	28,040	22,790	17,970	14,590	11,220	7,840	4,470
3,220	3,240	115,070	96,320	50,620	37,500	28,700	23,450	18,390	15,020	11,640	8,270	4,890
3,240	3,260	117,520	98,770	52,270	39,150	29,360	24,110	18,860	15,440	12,070	8,690	5,320
3,260	3,280	119,960	101,210	53,920	40,800	30,020	24,770	19,520	15,870	12,490	9,120	5,740
3,280	3,300	122,410	103,660	55,570	42,440	30,670	25,420	20,170	16,290	12,910	9,540	6,160
3,300	3,320	124,850	106,100	57,220	44,090	31,330	26,080	20,830	16,710	13,340	9,960	6,590
3,320	3,340	127,300	108,550	58,870	45,740	32,620	26,740	21,490	17,140	13,760	10,390	7,010
3,340	3,360	129,740	110,990	60,430	47,300	34,180	27,370	22,120	17,540	14,160	10,790	7,410
3,360	3,380	132,190	113,440	61,970	48,850	35,720	27,990	22,740	17,940	14,560	11,190	7,810
3,380	3,400	134,630	115,880	63,950	50,390	37,260	28,600	23,350	18,330	14,960	11,580	8,210
3,400	3,420	137,080	118,330	66,160	51,930	38,810	29,220	23,970	18,730	15,350	11,980	8,600
3,420	3,440	139,520	120,770	68,360	53,480	40,350	29,840	24,590	19,340	15,750	12,380	9,000
3,440	3,460	141,970	123,220	70,570	55,020	41,890	30,450	25,200	19,950	16,150	12,770	9,400
3,460	3,480	144,410	125,660	72,770	56,560	43,440	31,070	25,820	20,570	16,540	13,170	9,790
3,480	3,500	146,860	128,110	74,980	58,110	44,980	31,860	26,440	21,190	16,940	13,570	10,190
3,500	3,520	149,300	130,550	77,180	59,650	46,530	33,400	27,060	21,810	17,340	13,960	10,590
3,520	3,540	151,750	133,000	79,390	61,190	48,070	34,940	27,670	22,420	17,740	14,360	10,990
3,540	3,560	154,190	135,440	81,590	62,840	49,610	36,490	28,290	23,040	18,130	14,760	11,380
3,560	3,580	156,640	137,890	83,800	65,050	51,160	38,030	28,910	23,660	18,530	15,150	11,780
3,580	3,600	159,080	140,330	86,000	67,250	52,700	39,570	29,530	24,280	19,030	15,550	12,180
3,600	3,620	161,530	142,780	88,210	69,460	54,240	41,120	30,140	24,890	19,640	15,950	12,570
3,620	3,640	163,970	145,220	90,410	71,660	55,790	42,660	30,760	25,510	20,260	16,340	12,970
3,640	3,660	166,420	147,670	92,620	73,870	57,330	44,200	31,380	26,130	20,880	16,740	13,370
3,660	3,680	168,860	150,110	94,820	76,070	58,870	45,750	32,620	26,750	21,500	17,140	13,760
3,680	3,700	171,310	152,560	97,030	78,280	60,420	47,290	34,170	27,360	22,110	17,540	14,160
3,700	3,720	173,750	155,000	99,230	80,480	61,960	48,840	35,710	27,980	22,730	17,930	14,560
3,720	3,740	176,200	157,450	101,440	82,690	63,940	50,380	37,250	28,600	23,350	18,330	14,950
3,740	3,760	178,640	159,890	103,640	84,890	66,140	51,920	38,800	29,220	23,970	18,730	15,350
3,760	3,780	181,240		106,000	87,250	68,500	53,570	40,450	29,880	24,630	19,380	15,780
3,780	3,800	183,830	165,080	108,350	89,600	70,850	55,220	42,090	30,530	25,280	20,030	16,200
3,800	3,820	186,430	167,680	110,710	91,960	73,210	56,870	43,740	31,190	25,940	20,690	16,620
3,820	3,840	189,020	170,270	113,060	94,310	75,560	58,520	45,390	32,270	26,600	21,350	17,050
3,840	3,860	191,620	172,870	115,420	96,670	77,920	60,160	47,040	33,910	27,260	22,010	17,470
3,860	3,880	194,210	175,460	117,770	99,020	80,270	61,810	48,690	35,560	27,920	22,670	17,890
3,880	3,900	196,810	178,060	120,130	101,380	82,630	63,880	50,340	37,210	28,580	23,330	18,320
3,900	3,920	199,540	180,790	122,620	103,870	85,120	66,370	52,080	38,950	29,280	24,030	18,780
3,920	3,940	202,270	183,520	125,110	106,360	87,610	68,860	53,820	40,700	29,980	24,730	19,480
3,940	3,960	205,000	186,250	127,600	108,850	90,100	71,350	55,570	42,440	30,670	25,420	20,170
3,960	3,980	207,730	188,980	130,090	111,340	92,590	73,840	57,310	44,180	31,370	26,120	20,870

월급여액(2 [비과세및학자												위 : 원)
이상	사금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10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3,980	4,000	210,460	191,710	132,580	113,830	95,080	76,330	59,050	45,930	32,800	26,820	21,570
4,000	4,020	213,190	194,440	135,070	116,320	97,570	78,820	60,790	47,670	34,540	27,510	22,260
4,020	4,040	215,920	197,170	137,560	118,810	100,060	81,310	62,560	49,410	36,290	28,210	22,960
4,040	4,060	218,650	199,900	140,050	121,300	102,550	83,800	65,050	51,160	38,030	28,910	23,660
4,060	4,080	221,380	202,630	142,540	123,790	105,040	86,290	67,540	52,900	39,770	29,610	24,360
4,080	4,100	224,110	205,360	145,030	126,280	107,530	88,780	70,030	54,640	41,520	30,300	25,050
4,100	4,120	226,840	208,090	147,520	128,770	110,020	91,270	72,520	56,380	43,260	31,000	25,750
4,120	4,140	229,570	210,820	150,010	131,260	112,510	93,760	75,010	58,130	45,000	31,880	26,450
4,140	4,160	232,300	213,550	152,500	133,750	115,000	96,250	77,500	59,870	46,750	33,620	27,150
4,160	4,180	235,030	216,280	154,990	136,240	117,490	98,740	79,990	61,610	48,490	35,360	27,840
4,180	4,200	237,760	219,010	157,480	138,730	119,980	101,230	82,480	63,730	50,230	37,110	28,540
4,200	4,220	240,490	221,740	159,970	141,220	122,470	103,720	84,970	66,220	51,970	38,850	29,240
4,220	4,240	243,220	224,470	162,460	143,710	124,960	106,210	87,460	68,710	53,720	40,590	29,930
4,240	4,260	245,950	227,200	164,950	146,200	127,450	108,700	89,950	71,200	55,460	42,340	30,630
4,260	4,280	248,680	229,930	167,440	148,690	129,940	111,190	92,440	73,690	57,200	44,080	31,330
4,280	4,300	251,410	232,660	169,930	151,180	132,430	113,680	94,930	76,180	58,950	45,820	32,700
4,300	4,320	254,140	235,390	172,420	153,670	134,920	116,170	97,420	78,670	60,690	47,560	34,440
4,320	4,340	256,870	238,120	174,910	156,160	137,410	118,660	99,910	81,160	62,430	49,310	36,180
4,340	4,360	259,600	240,850	177,400	158,650	139,900	121,150	102,400	83,650	64,900	51,050	37,930
4,360	4,380	262,330	243,580	179,890	161,140	142,390	123,640	104,890	86,140	67,390	52,790	39,670
4,380	4,400	265,060	246,310	182,380	163,630	144,880	126,130	107,380	88,630	69,880	54,540	41,410
4,400	4,420	267,790	249,040	184,870	166,120	147,370	128,620	109,870	91,120	72,370	56,280	43,150
4,420	4,440	270,520	251,770	187,360	168,610	149,860	131,110	112,360	93,610	74,860	58,020	44,900
4,440	4,460	273,250	254,500	189,850	171,100	152,350	133,600	114,850	96,100	77,350	59,770	46,640
4,460	4,480	275,980	257,230	192,340	173,590	154,840	136,090	117,340	98,590	79,840	61,510	48,380
4,480	4,500	278,710	259,960	194,830	176,080	157,330	138,580	119,830	101,080	82,330	63,580	50,130
4,500	4,520	281,440	262,690	197,320	178,570	159,820	141,070	122,320	103,570	84,820	66,070	51,870
4,520	4,540	284,170	265,420	199,810	181,060	162,310	143,560	124,810	106,060	87,310	68,560	53,610
4,540	4,560	286,900	268,150	202,300	183,550	164,800	146,050	127,300	108,550	89,800	71,050	55,360
4,560	4,580	289,630	270,880	204,790	186,040	167,290	148,540	129,790	111,040	92,290	73,540	57,100
4,580	4,600	292,360	273,610	207,280	188,530	169,780	151,030	132,280	113,530	94,780	76,030	58,840
4,600	4,620	295,090	276,340	209,770	191,020	172,270	153,520	134,770	116,020	97,270	78,520	60,580
4,620	4,640	297,820	279,070	212,260	193,510	174,760	156,010	137,260	118,510	99,760	81,010	62,330
4,640	4,660	300,550	281,800	214,750	196,000	177,250	158,500	139,750	121,000	102,250	83,500	64,750
4,660	4,680	303,280	284,530	217,240	198,490	179,740	160,990	142,240	123,490	104,740	85,990	67,240
4,680	4,700	306,010	287,260	219,730	200,980	182,230	163,480	144,730	125,980	107,230	88,480	69,730
4,700	4,720	308,740	289,990	222,220	203,470	184,720	165,970	147,220	128,470	109,720	90,970	72,220
4,720	4,740	311,470	292,720	224,710	205,960	187,210	168,460	149,710	130,960	112,210	93,460	74,710
4,740	4,760	314,200	295,450	227,200	208,450	189,700	170,950	152,200	133,450	114,700	95,950	77,200
4,760	4,780	316,930	298,180	229,690	210,940	192,190	173,440	154,690	135,940	117,190	98,440	79,690